

# 상표법 도식화 필기자료

2023年 6月

김영남 변리사

## <상표법의 목적>

- ①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
- ② 미등록 상표사용자

공극적인 목적

공익적 성격이 강함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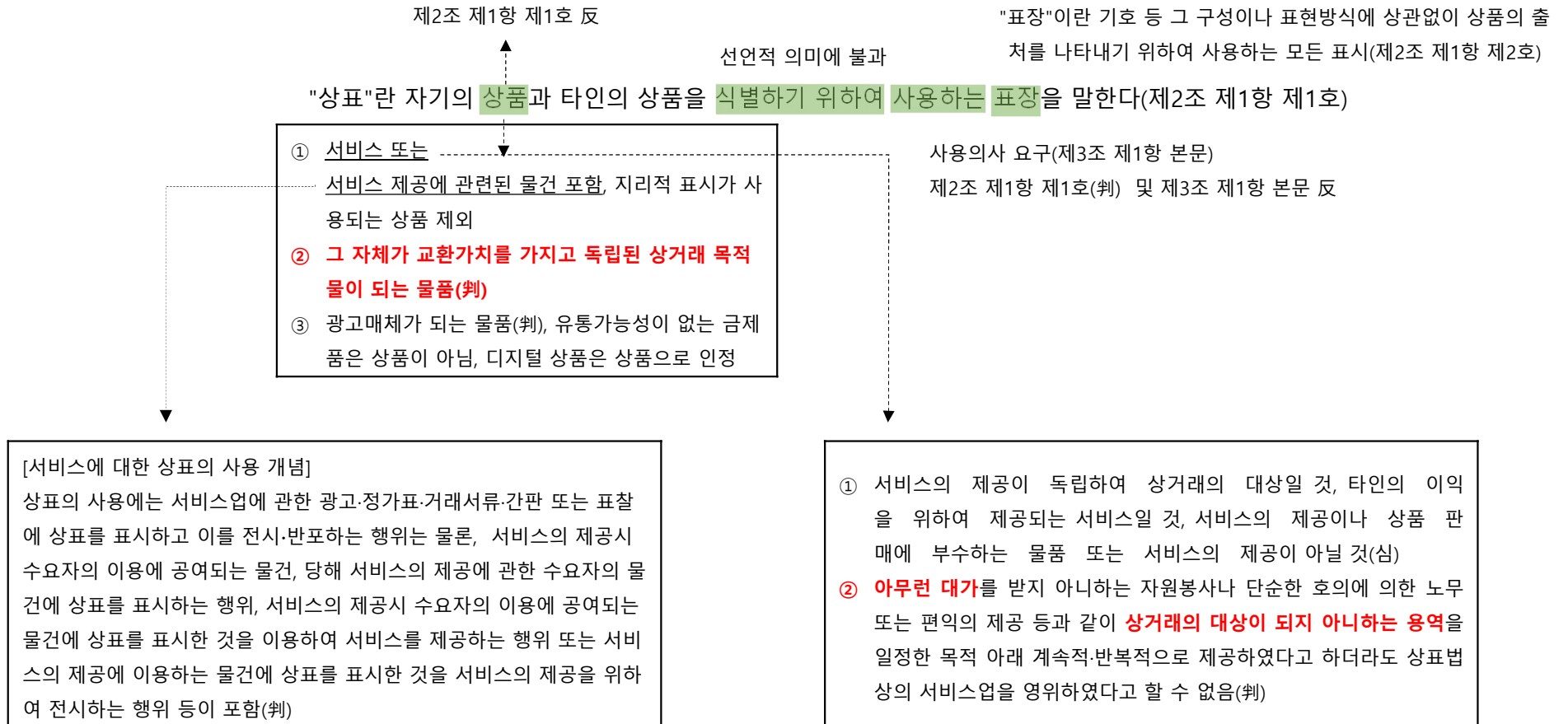
- ① 1차적 수단에 불과
- ② **상표의 기능을 보호**
- ③ **광의의 의미**

- ① 사용에 의해 형성
- ② 기 형성된 신용, 신용의 가능성

### <상표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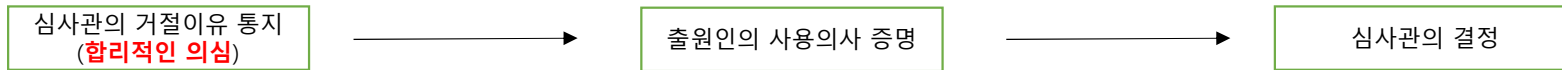
자타상품식별	<b>본원적 기능</b>
출처표시	출처의 동일성, 익명의존재로서 추상적 출처
품질보증	<b>품질의 동일성</b> (우수성X), 공익
광고선전	사익
재산적, 경쟁적	사익

## <상표의 개념>



## <사용의사확인제도>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음(제3조 제1항 본문)



판단방법: 외형적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등록주의의 근간

- ①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
- ② 건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
- ③ 개인이 법령상 일정자격 등이 필요한 상품과 관련하여 건련관계가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지정한 경우
- ④ 기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이나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
- 심사관은 해당 출원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출원·등록 이력이나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업범위 등을 참고하여 출원인의 상표선점 등 주관적 의도를 추정
- 출원인이 연예인·방송프로그램·유명캐릭터 등의 명칭을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 특정 또는 다수의 상표를 다수의 비유사 상품에 출원하는 경우
- 가맹본부(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이 출원하는 경우
- 타인이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한 의약품 명칭과 동일한 의약품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미성년자만으로 공동출원한 경우. 다만,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상표 사용분야와 건련관계가 있는 상품에 출원한 경우는 제외

- 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된 경우 : 등록
- ②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 거절

-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인 경우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명칭 전부에 대하여 사용의사 인정
- 건련관계가 있는 유사상품군의 경우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건련관계가 있는 유사상품군 전부에 대하여 사용의사 인정

### 탐플란트 사건

**법령상 제한이 있다하여 사용의사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서비스업과 출원인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출원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상표의 사용>

제2조 제2항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i)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ii)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에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전전유통의 행위

- ① 상품명이나 제조원 표시 불요(判)
- ② 지정상품과 관련(判)
- ③ 거래서류(判)
- ④ 명함이면(判)
- ⑤ 세무서에 신고하는 영수증(判)
- ⑥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判)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행위(判)
②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③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① 서비스에 관한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이다.

↓  
형식적 + 실질적(출처표시 기능)

『상표의 기능발휘 여부』

➢ 판단방법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判)

➢ 구체적 Case

- ① 상호
- ② **설명적 문구(判)**
- ③ **디자인: 순전한 디자인(判), 디상배선(判)**
- ④ **제호: 책의 내용을 표시(判), 성사시광(判)**
- ⑤ 비교광고
- ⑥ 기업이미지 광고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상품』

- ① 제품의 포장용 상자에 표시된 상표
- ②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표시된 상표**
- ③ 완성품에 표시된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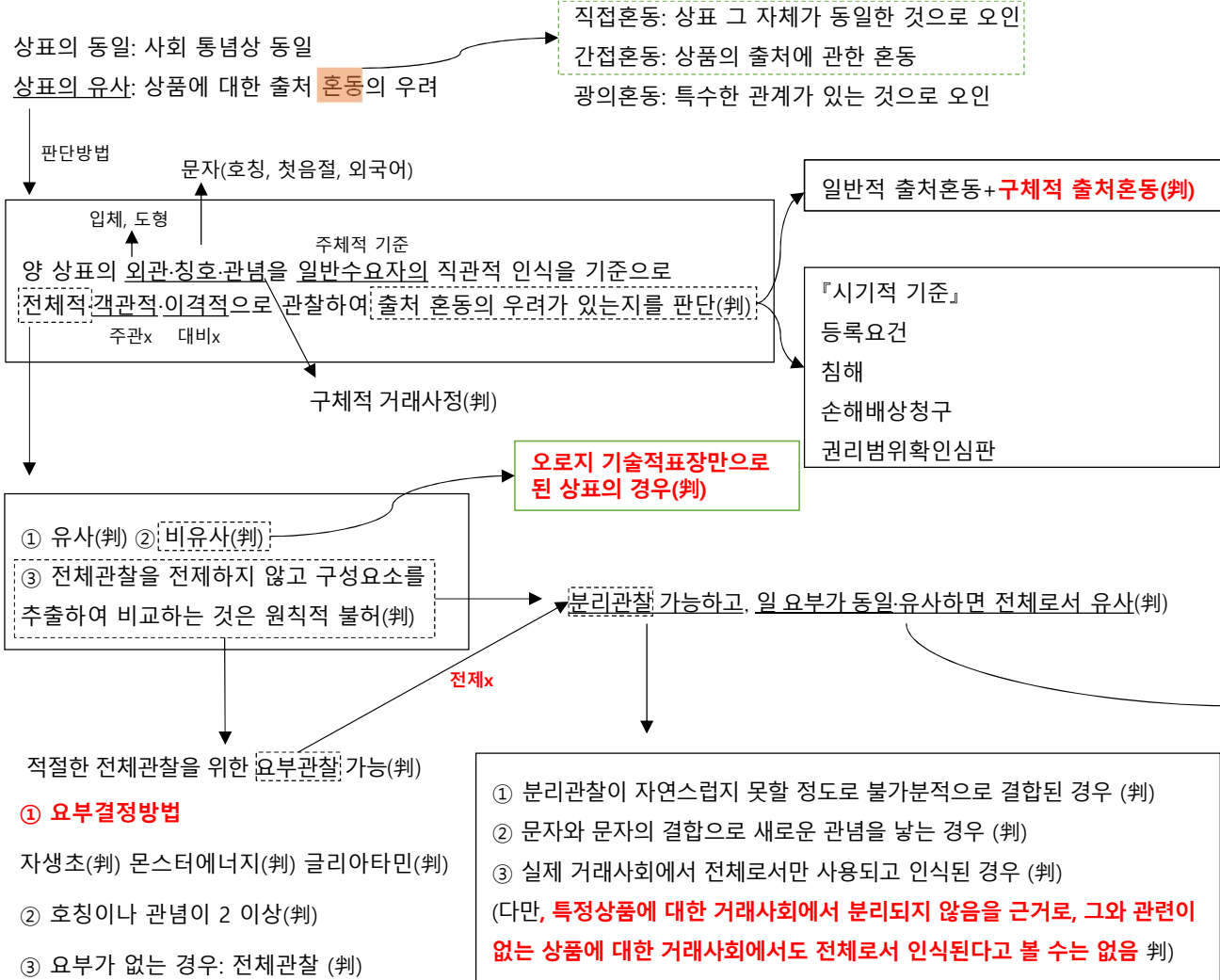
『도메인 이름』

- ① 도메인 이름 및 문제점
- ② 인용상표로서 지위(34조 1항 9호, 11호, 12호, 13호)
- ③ 상표권 침해
- ④ 상표의 사용 : 태연화내전

※ SONY 사건(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1.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조정기(리모콘)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의 일종으로서 원격조정기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위 원격조정기를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부회로기판 위에 표기된 위 'SONY' 표장을 가리켜 이를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통상 원격조정기(리모콘)의 경우 하단 부위에 그 상표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는 제조자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등록상표 "SONY"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조정기의 표면에 '만능eZ 소니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위 **원격조정기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 등록상표 "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동일: 사회 통념상 동일  
 상품의 유사: 상품에 대한 출처 혼동의 우려

대상	판단방법
상품 vs 상품	양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를 가정/ <b>상품의 속성</b> (품,형,용)과 <b>거래실정</b> (생,판,수)
서비스 vs 서비스	성,내,수,장,제,수,범
서비스 vs 상품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X, 밀, 동, 용, 장, 수, 출

분리관찰은 남용X

양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 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비유사(判)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후출원상표	선출원상표	유사여부
자생초(한의원업)	자생한의원(한의원업)	유사
POSFIBER(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	POS(시멘트)	유사
리엔(샴푸)	리엔케이(샴푸)	유사
망고몬스터(카페업)	MONSTER ENERGY(비타민 음료)	비유사
GLIATAMIN(의약품)	GLIATILIN(의약품)	비유사
누들로드(국수)	피자로드(피자)	비유사
Cherry Spoon(의류판매알선업)	Spoon(속옷도매업)	비유사
Romantic Night in Seattle(스킨밀크)	Romantic(스킨밀크로션)	비유사
POPSAVENUE(우산, 핸드백)	AVENUE(우산, 핸드백)	비유사
NICOLE MILLER(의류)	MILLER(의류)	비유사
DRAGON QUEST(선글라스)	QUEST(안경)	유사
빈츠(과자류)	비츠(과자류)	유사
Rolens(시계)	 (시계)	비유사
		유사

## 자생초 VS 자생한의원

선등록상표 등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① '자생' 부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 등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②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자생한의원'이나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상표가 '한방의료업' 등에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식별력이 있는 ③ '자생' 부분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거나 최소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등록상표 등에서 '자생'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중 ① '자생' 부분은 선등록상표 등의 요부와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에 ② '초' 부분은 약초나 건초 등과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약의 재료나 원료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자생'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도 미약하다. ③ 나아가 '자생초'가 '스스로 자라나는 풀'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등록상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는 '자생'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등록상표 등과 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상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망고몬스터 VS MONSTER ENERGY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모두 '몬스터' 또는 '몬스터'로 음역되는 'MONSTER'를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3. 10. 16.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 'ICEMONSTER', '티켓몬스터', '클럽몬스터, CLUB MONSTER', 'MONSTER PIZZA', 'monster zym', 'bubble monster' 등과 같이 '몬스터'나 'MONSTER' 또는 'monster' 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상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선등록(사용)상표들의 출원일 혹은 원고가 주장하는 선등록(사용)상표들의 사용개시일 이전에도 이미 선등록(사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음료수류 등에 관하여 '디지털 몬스터, DIGITAL MONSTER', '포켓 몬스터, POCKET MONSTER', 'MONSTER FARM' 등과 같이 '몬스터'나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상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원심 기록에 나타난 '몬스터'나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을 둘러싼 구체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공통되는 '몬스터' 또는 'MONSTER'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이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몬스터' 또는 'MONSTER'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망고'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에 제공되는 음료나 아이스크림의 원료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선등록(사용)상표들에 공통되는 문자 부분인 'MONSTER ENERGY'에서 'ENERGY' 부분도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그러므로 대비의 대상이 되는 문자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모두 그 각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한글과 영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 수와 글자체 등의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망고몬스터'로 호칭되는데 비하여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몬스터에너지'로 호칭되어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망고 괴물'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하여 선등록(사용)상표들은 '괴물 에너지'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그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글리아타민 사건(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 GLIATAMIN VS GLIATILIN

‘GLIA(글리아)’의 의미 및 사용실태, 의약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상표들 중 뒷부분에 위치한 ‘TAMIN’과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BEAN POLE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두 상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표장은 모두 검은색 도형 내부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의 도형 2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 점, 검은색 도형의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보다 2배 정도 두꺼운 점 등에서 공통되고, 알파벳 ‘B’를 이용하여 도안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모티브가 동일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며, 출원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오각형이어서 상부가 뾰족한 형상을 이루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사각형이어서 상부가 평평한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 Rolex 사건(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Rolens VS   
ROLEX

  
ROLEX

등록상표 "Rolens"와 선출원된 인용상표  ROLEX 를 비교하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는 시계류의 국내 일반 거래계에서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다른 한편 등록상표의 상품들은 중저가의 상품이어서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사람들인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상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 고품질의 시계로서 그 주요 거래자는 재력이 있는 소수의 수요자에 불과하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외형과 품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기록상 국내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다는 자료도 없거니와 이들 상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등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국내에서는 공항 등의 보세구역 면세점에서 극히 소량 거래되고 있을 뿐이고 외국 여행객을 통하여 극소수 반입되는 정도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 Saboo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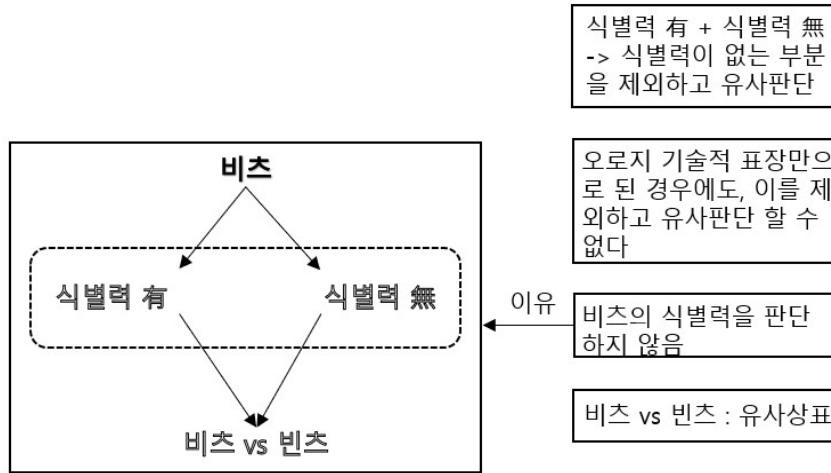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상품
 A photograph of a product, likely a mango, with a black circular label. The label features the Saboo logo and the text "SABOO MANGO".	 A photograph of a product, likely a mango, with a black circular label. The label features the sobía logo and the text "sobía MANGO".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비츠 사건(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원심>



<대법원>

- ① 유사판단 방법
- ②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유사상표이나, 전체로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비유사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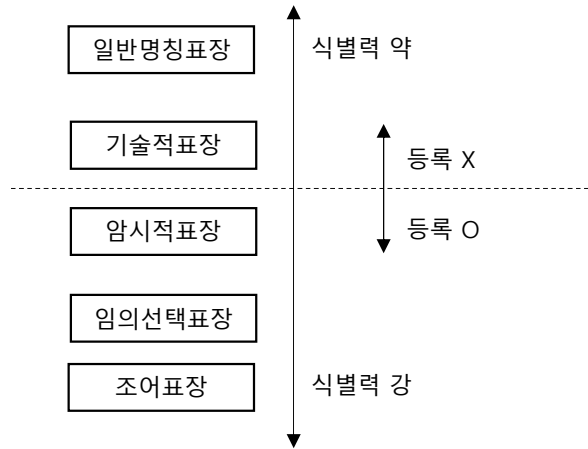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면, 전체로서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클 것인바,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를 유사판단시에도 식별력 유무를 고려한다.

- ① 비츠 식별력 있다.
- ② 비츠 vs 빈츠 : 유사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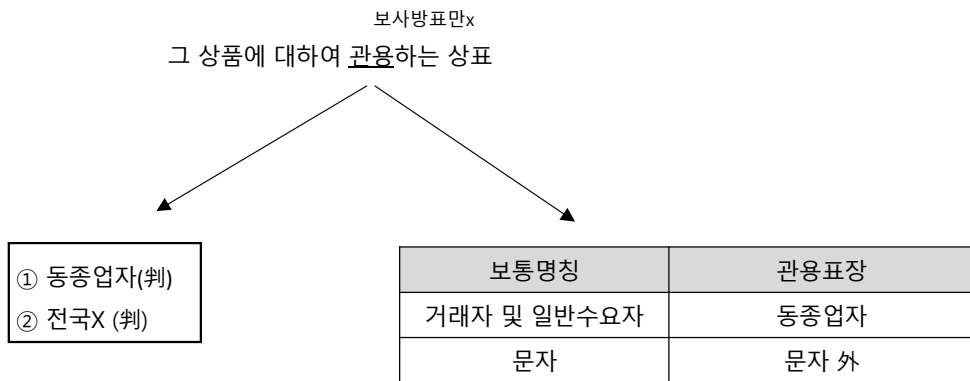
만약 대법원에서 비츠가 식별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수요자는 비츠를 보고 상표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인식할 것인바, 빈츠와 출처 혼동 가능성이 희박하여 비유사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비츠의 식별력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유사판단 한 것은 위법입니다.

### <상표의 식별력>



### <제33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1항 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직감O, 암시X                      부기적·보조적 O

- ① 실제 사용(判)
- ② 사전 등(判)
- ③ 전국 X(判)
- ④ 식물신품종보호법(判)
- ⑤ 보통명칭화

의의	식별력 有 -> 無	
판단방법	예외적인 경우, 객관적	
유형	대명사, 신제품, 상표관리 소홀, 상품명 길고 불편	
방지	선정시	식별력이 강한 상표
	내부적	등록상표임을 표시, 병기하여 사용, 다른 상품, 동사나 소유 격화 사용X
	외부적	사용권자, 간행물, 무단사용
취급	무효, 요부X, 제90조 제1항 제2호, 갱신가능	

### <제33조 제1항 제3호>

판단방법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 관계,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판단(判)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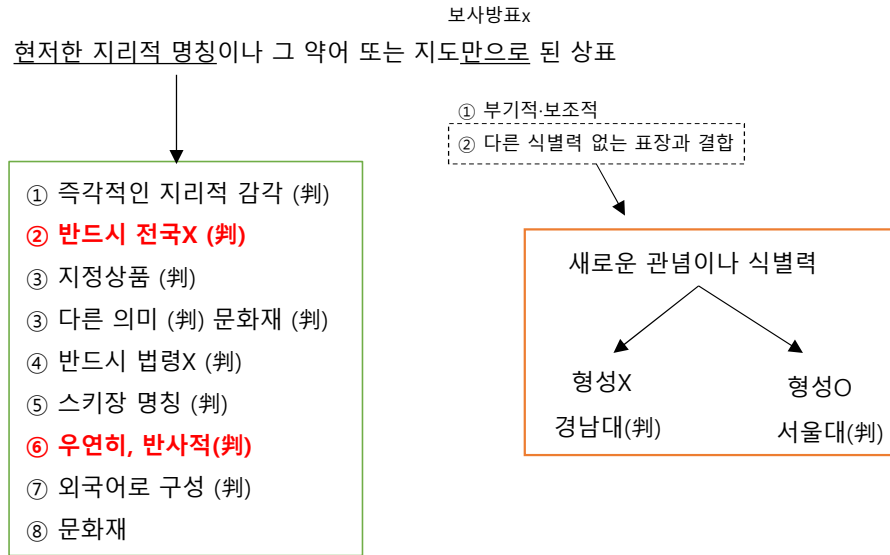
- ① 직감O 암시X
- ② 도안화 된 경우(判)

- ① 부기적·보조적
- ②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결함(심)

- ① 예시열거적
- ② 절대적품질표시
- ③ 직감
  - i) 심사숙고하거나 사전(判)
  - ii) 객관적 의미 + 실제 사용(判)
  - iii) 암시적 표장 + 실제 사용(判)
- ④ 의약품
  - i) 전문의약품(判)
  - ii) 일반의약품(判)
  - iii) 글리아타민(判)



### <제33조 제1항 제4호>



### <제33조 제1항 제6호>

보사방표x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x                      부기적·보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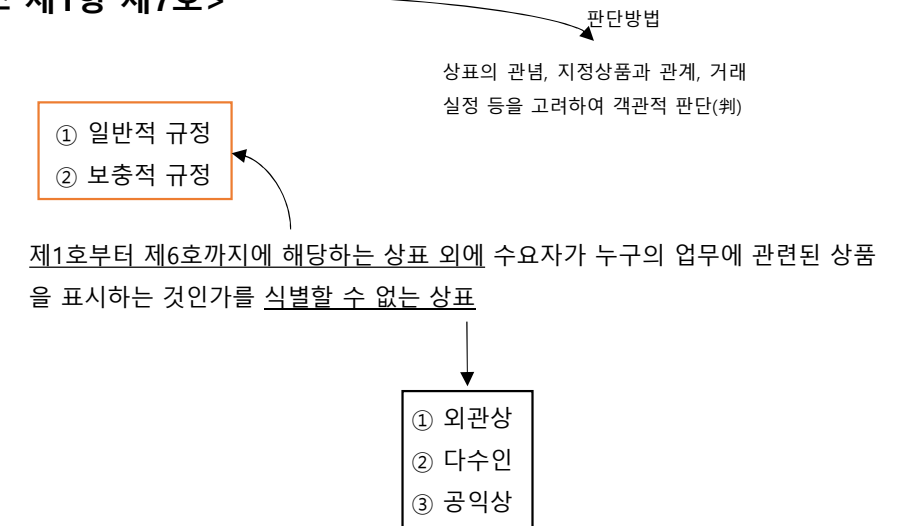
※ 유사판단시 무조건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判)

###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① 현실적 + 관념적(심)                      직감O, 암시X                      부기적·보조적 O
- ② 전화번호부, 인명록 (심)

### <제33조 제1항 제7호>



## <제33조 제2항>

판단방법

- ①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여,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判)
- ② 거래실정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하되 i) 상표자체 고유한 성격 내지 구성 ii) 자유사용의 필요성 iii) 사용기간 및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判)

- ① 제1호, 제2호: 견해 대립 有  
② 제7호: 등록가능(判)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① 실제로 사용한 상표(判)
- ② K2 判
- ③ 경남대 判
- ④ 몬테소리, 단박대출 判

- ① 주체: 지정상품의 수요자 및 거래자
- ② 시기: 결정시
- ③ 지역: 반드시 전국O(判)
- ④ 인식도: 현저하게X, 특출인X, 식별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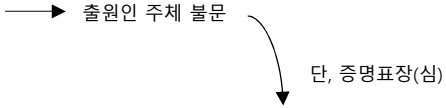
※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출원인이 입증해야 하고, 광고나 외국의 등록례로 추정되지 않고,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判)

## <사식취의 제(諸) 문제>

제(諸) 문제	내용	
추상적 식별력 구체적 식별력	① 추상적 식별력: 제33조 제1항 ② 구체적 식별력: 사식취	
출원인 외 사용실적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判)	
34①12	극복X(判)	
상표권의 효력	① 전용권: 동일 ② 금지권: 동일, 유사	
유사판단시 요부	사용된 상품O, 유사상품X(判)	
사식취	등록 전	제90조 제1항 제2호 배제(判)
	등록 후	① 하자치유X(判) ② 요부O(判) ③ 제90조 제1항 제2호 배제(判)

###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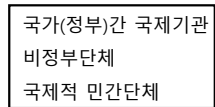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상품에 제한X

###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결국(이하, "동맹국 등"이라 함)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

###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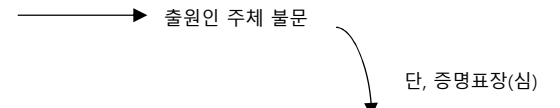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가능

### <제34조 제1항 제1호 라목>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가능.

### <제34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상품에 제한O

<제34조 제1항 제2호>

- ① 주관적 X, 객관적O (判)
- ② 전체로 판단 (判)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 ① 고인의 성명 그 자체 (判)
- ② 제34조 제1항 제12호 (헤밍웨이 判)

- ① 일반수요자에게 대체로 인식된 고인은 물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된 고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심)
- ② 사자

<제34조 제1항 제4호>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① 부적 (判)
- ② 중중의 공동선조의 군호로 구성된 표장 (예: 경녕군)

- ① 상대적 결정
- ② 부기적 부분

※ 기타 쟁점

- ① 출원이나 등록
- ② 신의칙反
- ③ 타인의 명성
- ④ 보충적 적용여부
- ⑤ 사용의사
- ⑥ 저작권
- ⑦ 법인명칭 등

- ① 자유민주주의
- ② 국가 간의 신뢰관계
- ③ 과격한 슬로건
- ④ 성적 수치심
- ⑤ 범죄
- ⑥ 국민간의 불신
- ⑦ 모욕

<제34조 제1항 제3호>

- ① 외국 ② 지방자치단체 등 ③ 공익을 주목적
- 부수적으로 영리업무 (判)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과 관계(判)

사회통념상 또는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표장 또는 단체명을 의미(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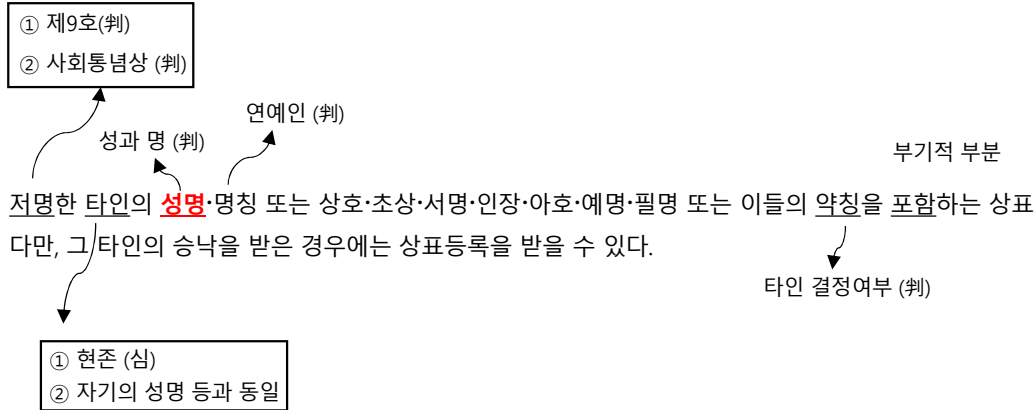
<제34조 제1항 제5호>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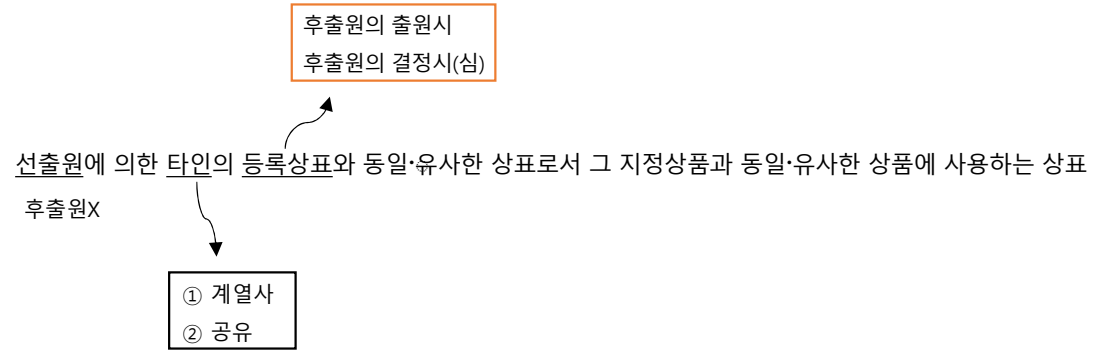
용어를 불문 (심)

용어를 불문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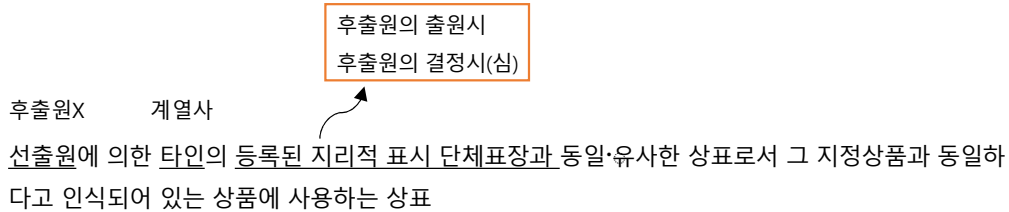
<제34조 제1항 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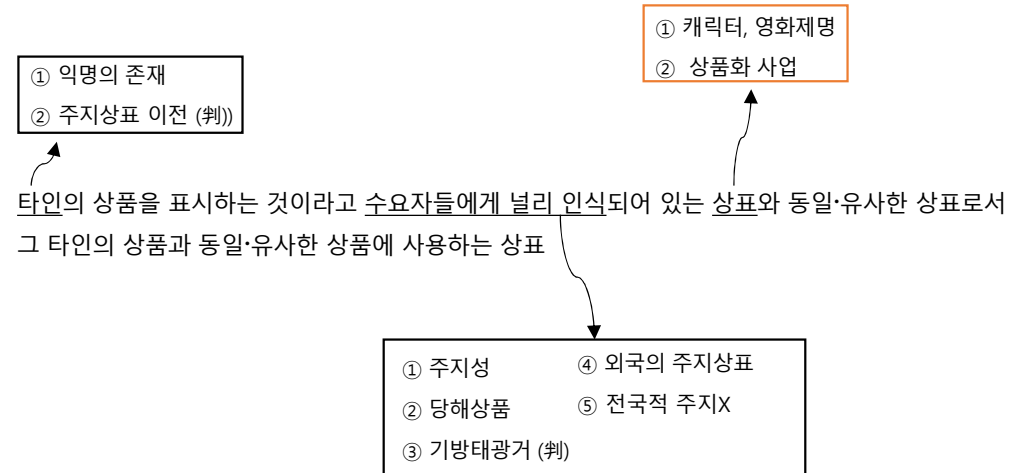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4조 제1항 제8호>



<제34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1항 제10호>

구체적 지역

특정 지역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34조 제1항 제11호>

- ① 저명성
- ② 이종상품
- ③ 기방태광거 (判)
- ④ 외국의 저명상표 (判)
- ⑤ 전국적 저명X

- ① 익명의 존재
- ② 업무표장의 주체
- ③ **현대사건(判)**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비유사 상품 부정적 이미지 상품**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심)

- ① 광의의 혼동.
- ② 적용범위
  - i) 상표: 구모아용 (判)
  - ii) 상품: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 (判)
- ③ 판단방법: 저명 상표를 쉽게 연상 (判)

<제34조 제1항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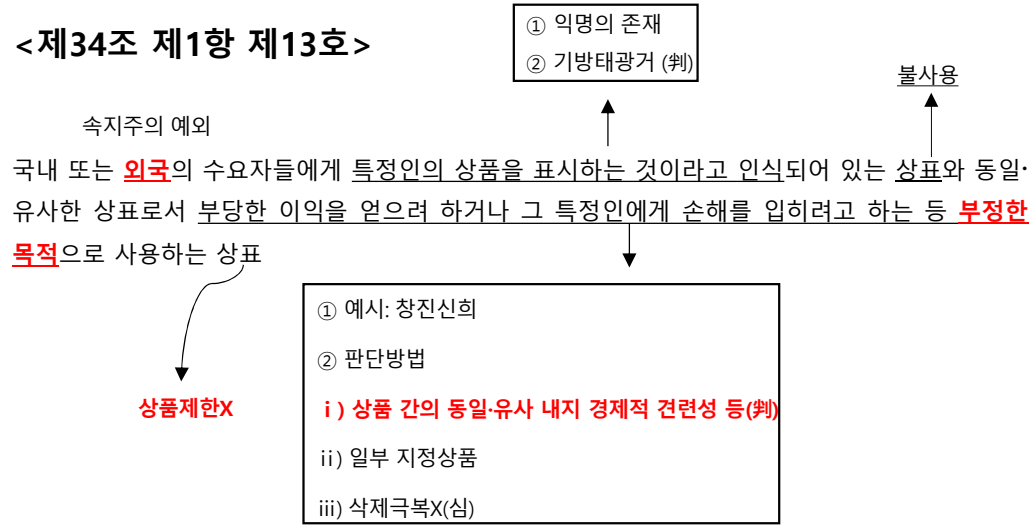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① 유형
- ② 판단
  - i) 거래통념에(判)
  - ii)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부실관계 (判)**
  - iii) 동재외용판 (判)
  - iv) 전체적으로 관찰
  - v) 절대적인 품질표시
  - vi) **상품의 품질을 직감X(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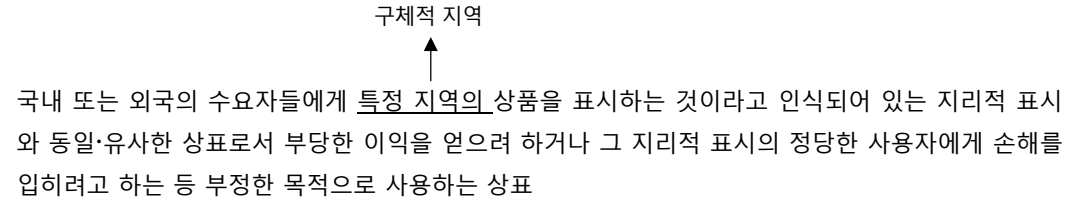
- ① 상품의 진정성
- ②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명칭(심)

- ① 특출인(반드시 전국X)
- 가. 익명의 존재
- 나. 타인
- ii) 외국회사 (判)
- 다. **특정 재료에 한정 (判)**
- ② 상표
- ③ 상품
- 가. **선사용상표가 저명한 경우(判)**
- 나. **선사용상표가 저명하지 않은 경우 (判)**
- ※ **악의의 선사용상표(判)**

<제34조 제1항 제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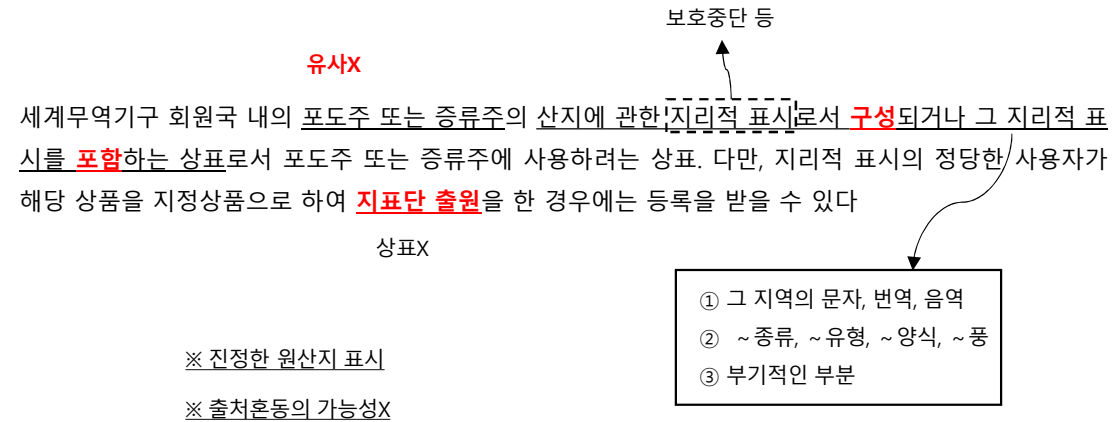
<제34조 제1항 제14호>



<제34조 제1항 제15호>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제34조 제1항 제16호>



<제34조 제1항 제17호>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출원주체 불문

<제34조 제1항 제1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 지표단

주원가차, 같은 생산자, 다른 품종 (심)

<제34조 제1항 제20호>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 ① 문서X
- ② 대중매체

신의관계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외국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判)

제명 등

- ① 계약관계 등이 입증
- ② 부정한 목적X

<제34조 제1항 제19호>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 지표단

보호중단 등

주원가차, 같은 생산자, 다른 품종 (심)

※ 진정한 원산지 표시

※ 출처혼동의 가능성X

- ① 번역, 음역
- ② ~종류, ~유형, ~양식, ~풍
- ③ 부기적인 부분
- ④ 등록여부 무관

<제34조 제1항 제21호>

파리협약, WTO, 상표법 조약 등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신의관계

상표권자, 선사용자

- ① 문서X
- ② 대중매체
- ③ 실질적

- ① 명시, 묵시
- ② 부정한 목적X
- ③ 의사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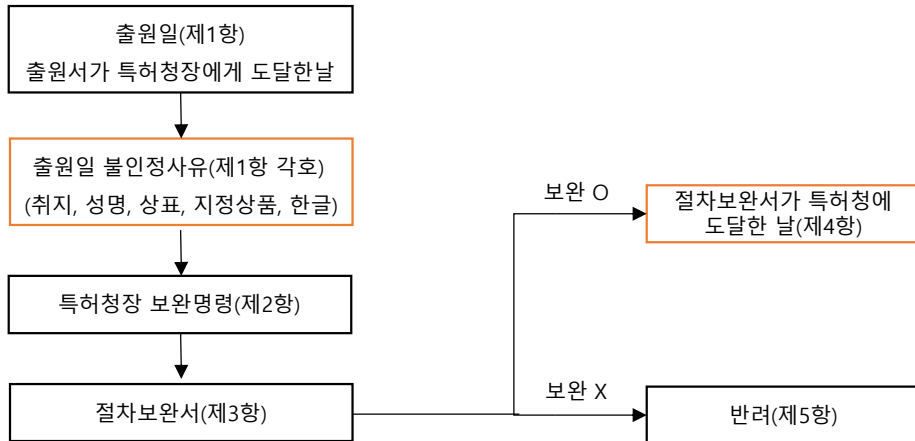
### <제34조 제3항>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함)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적법X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존속기간이 만료</li> <li>② 포기</li> <li>③ 취소심결확정(일부O, 형식적X)</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원일</li> <li>② 심판청구일 후 심결확정 전 상표등록출원 (判)</li> <li>③ 심판청구일 전 상표등록출원 (判)</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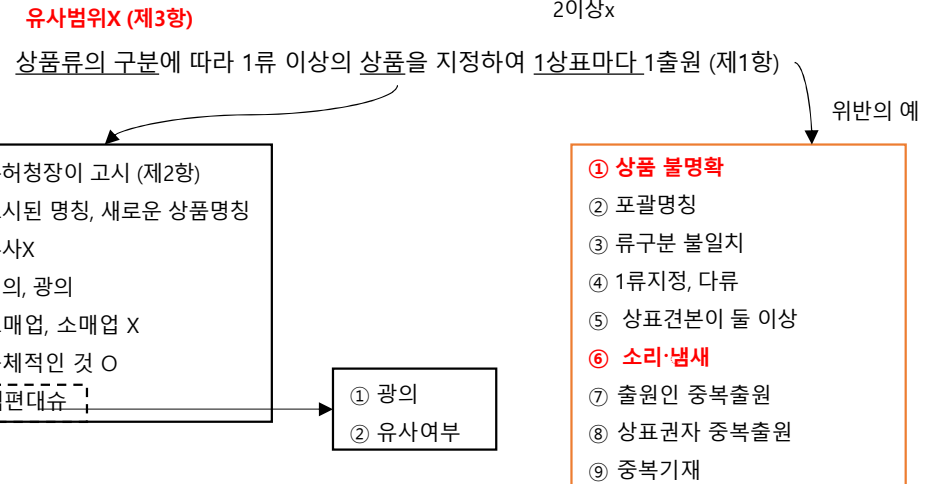
### <출원일 인정 등(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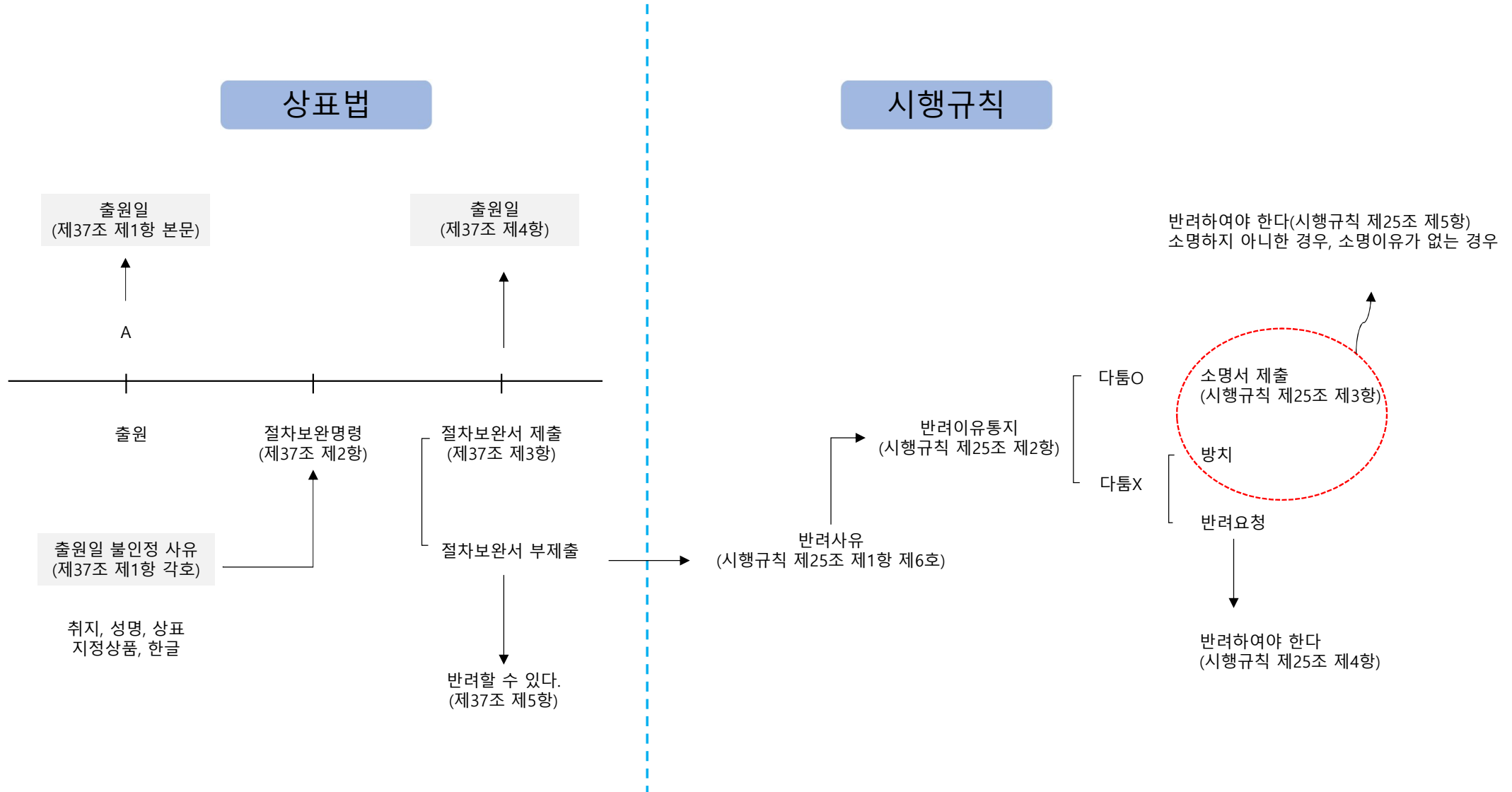
### <제35조>

	내용
의의 및 취지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
동일	선출원한 자
이일	① 협의 ② <b>추첨</b> ③ 협의명령
선원의 지위	① 제35조 제3항 ②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判) ③ 포기 등에 의하여 장래로 소멸(判)
지표단	① 선원의 지위 ②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 <1상표 1출원주의(제38조)>



#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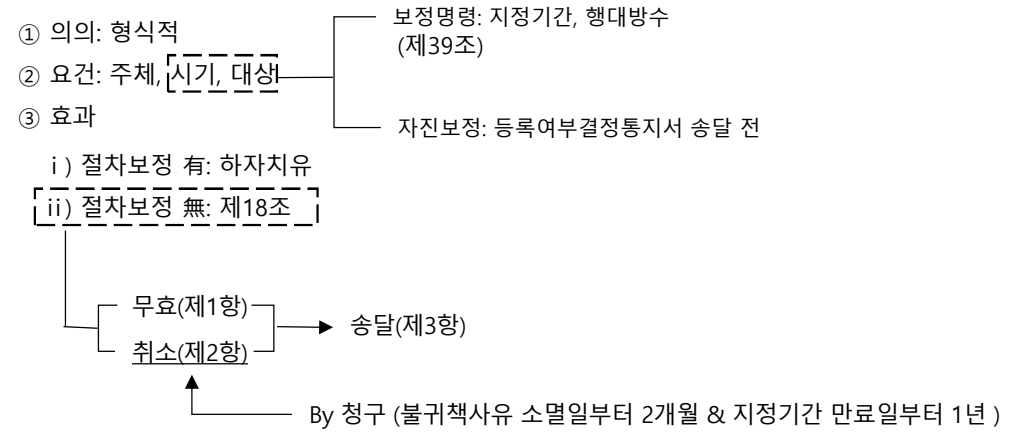
### <우선심사제도(제53조)>



###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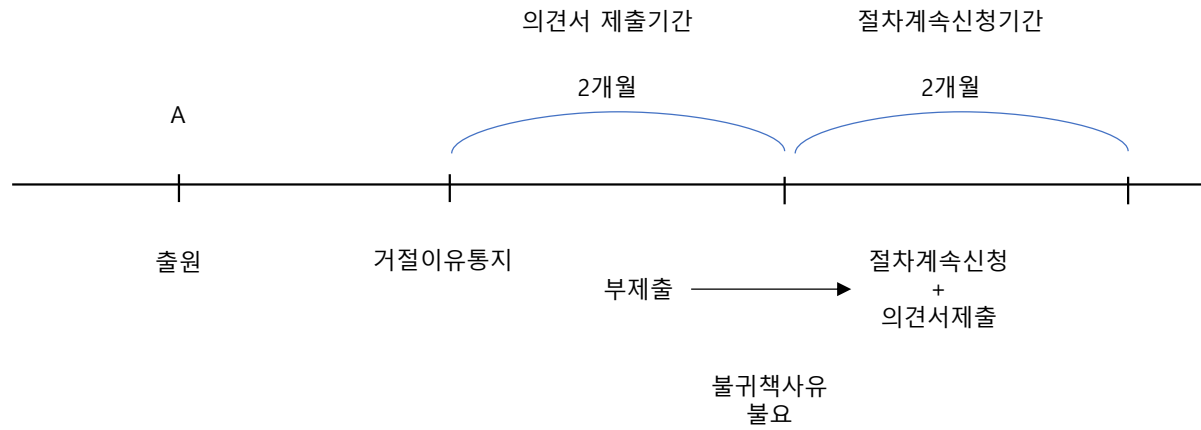


### <보정- 절차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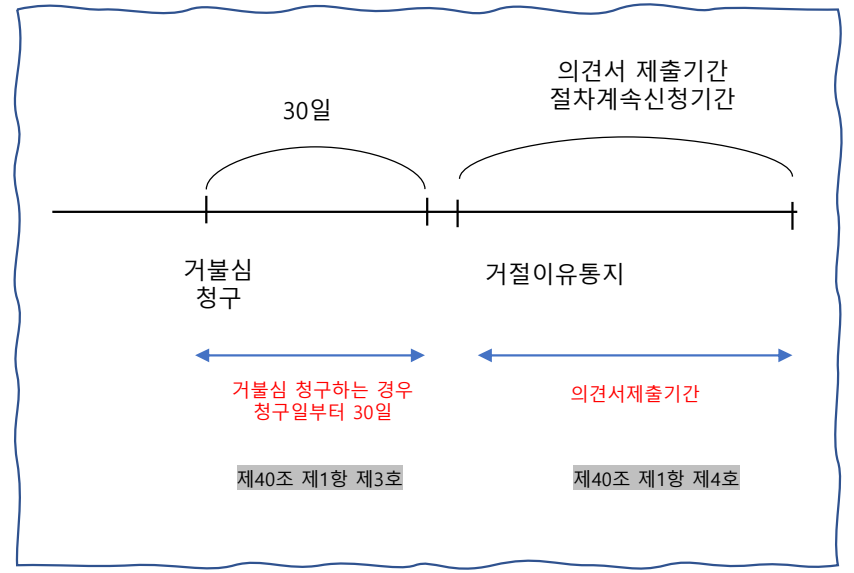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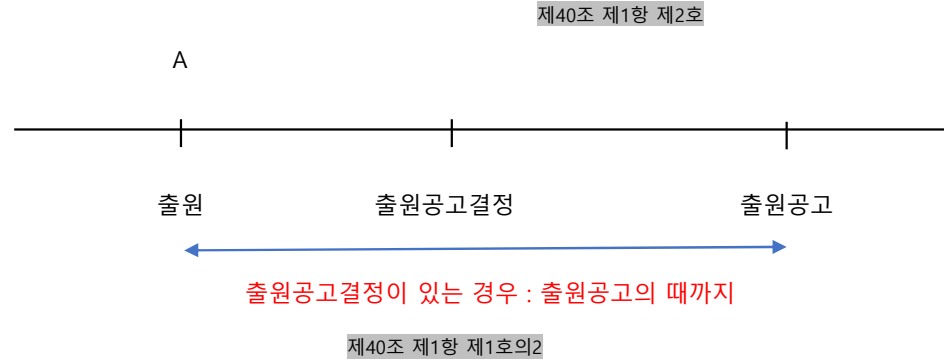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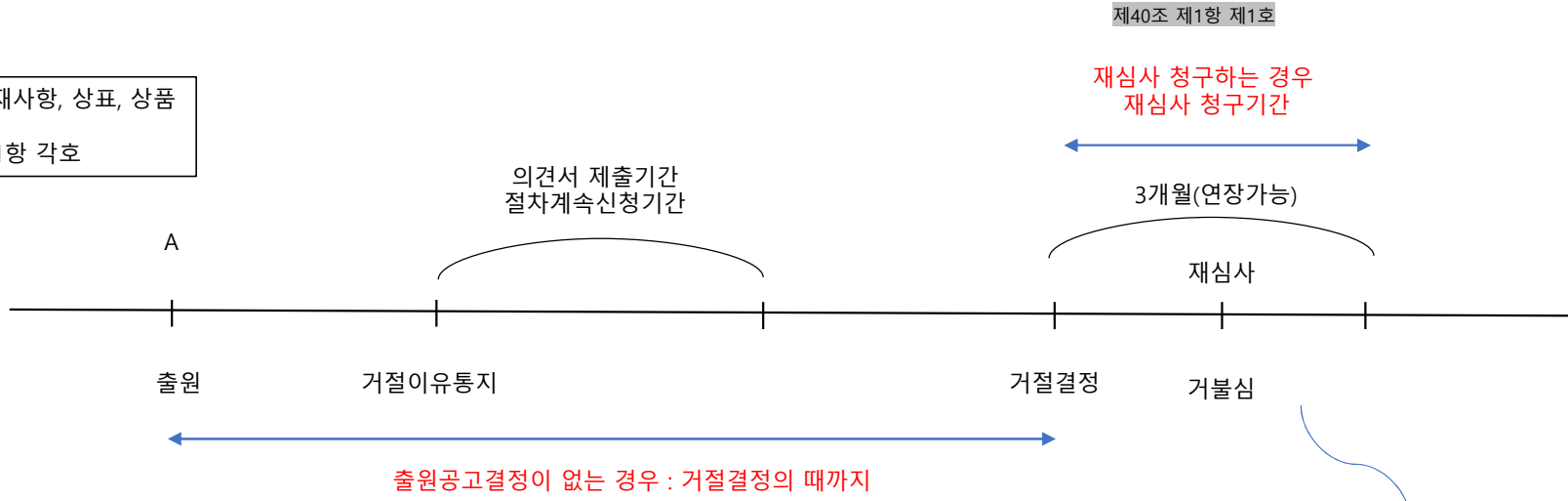
# <절차계속신청제도>

상표등록출원(제54조, 55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제87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제2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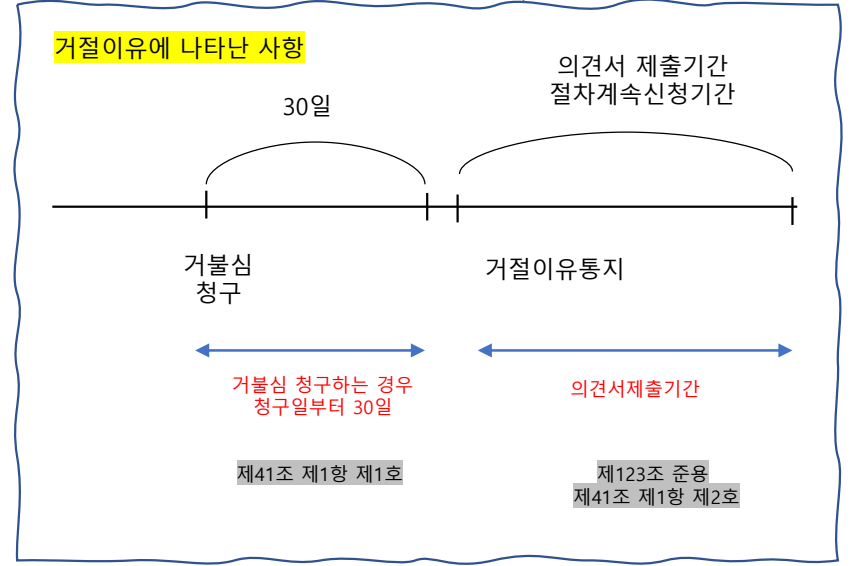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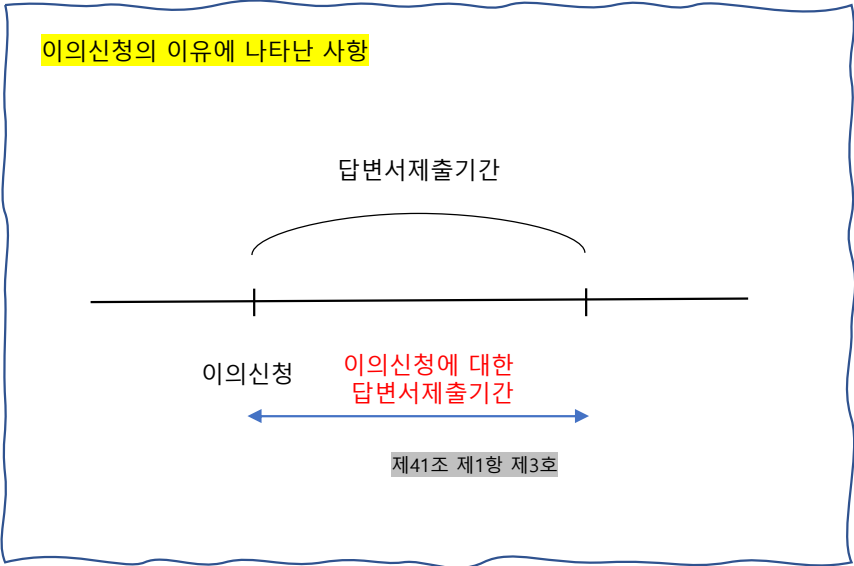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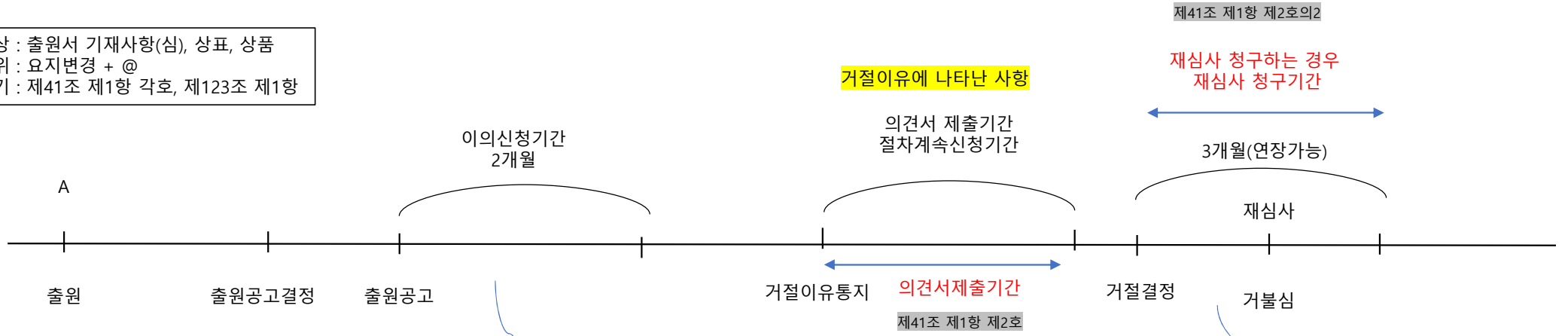
#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제40조 보정)>

대상 : 출원서 기재사항, 상표, 상품  
 범위 : 요지변경  
 시기 : 제40조 제1항 각호



#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제41조 보정)>

대상 : 출원서 기재사항(심, 상표, 상품  
범위 : 요지변경 + @  
시기 : 제41조 제1항 각호, 제123조 제1항



<보정각하결정(제42조)>

제41조 보정에는 적용x

제41조 보정  
보불심 불가  
거불심 가능  
(제42조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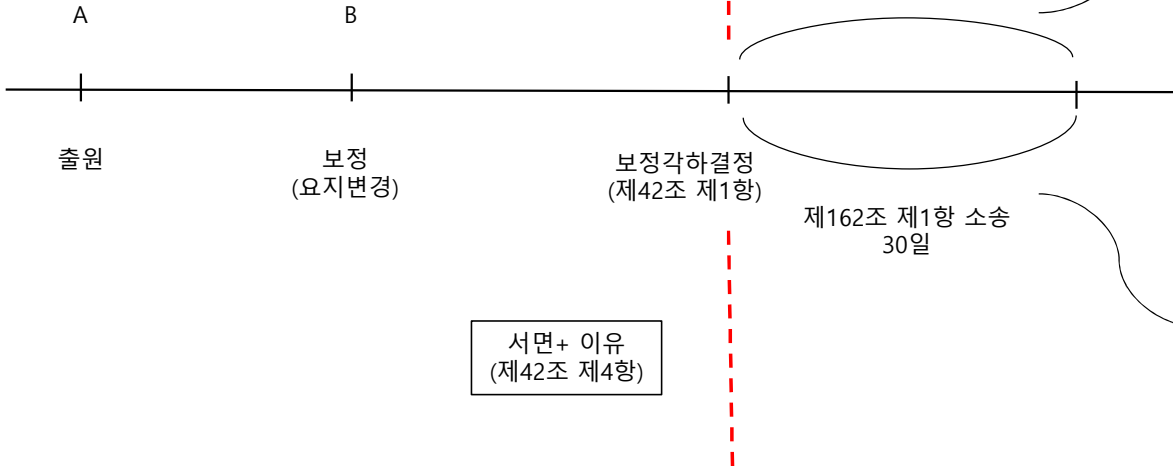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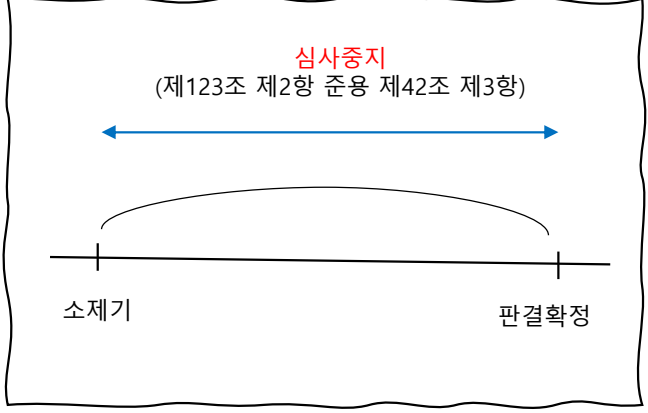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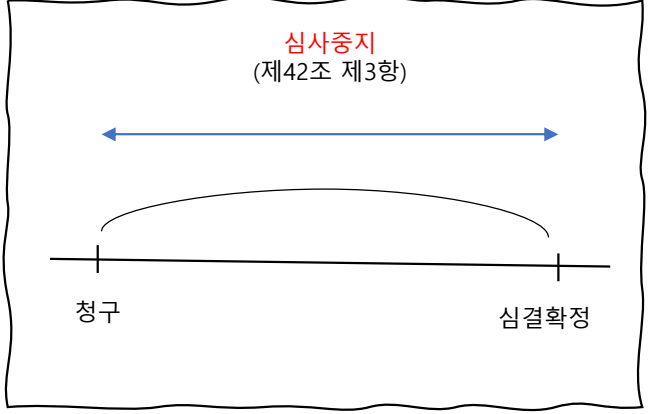
등록여부결정X  
출원공고결정X  
(제42조 제2항)

제115조 심판  
3개월(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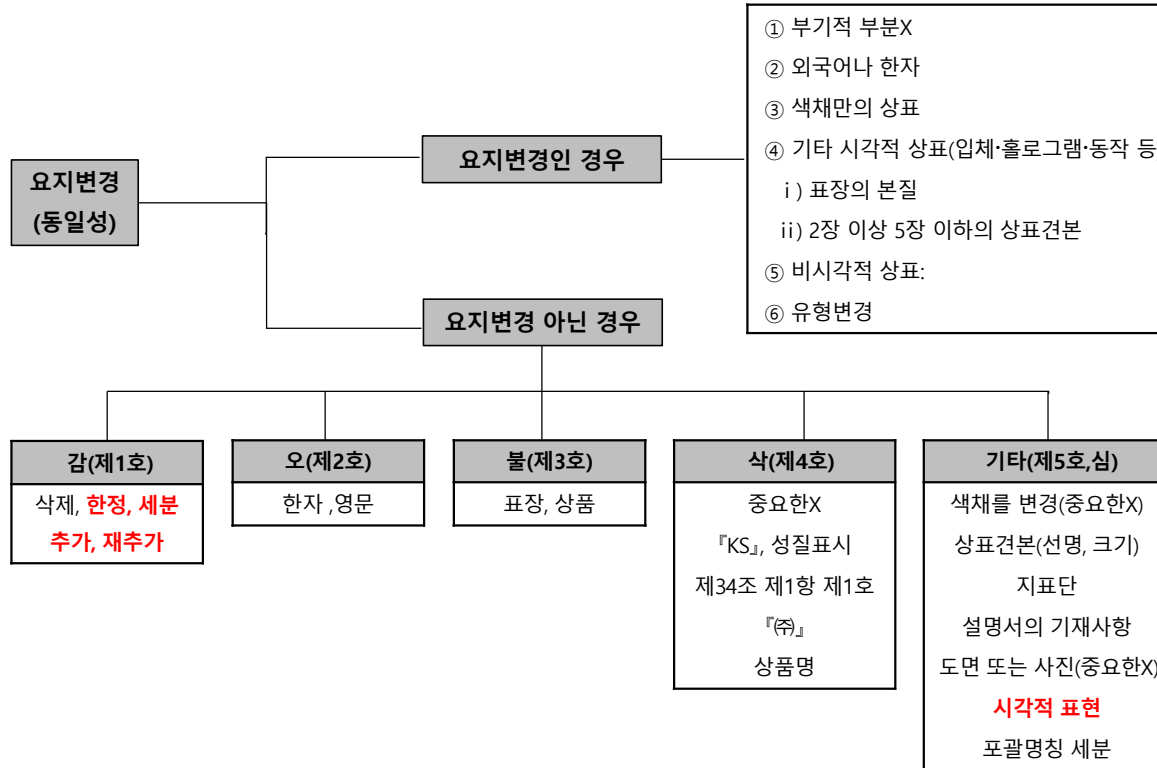
보정각하결정  
(제42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소송  
30일

서면+ 이유  
(제42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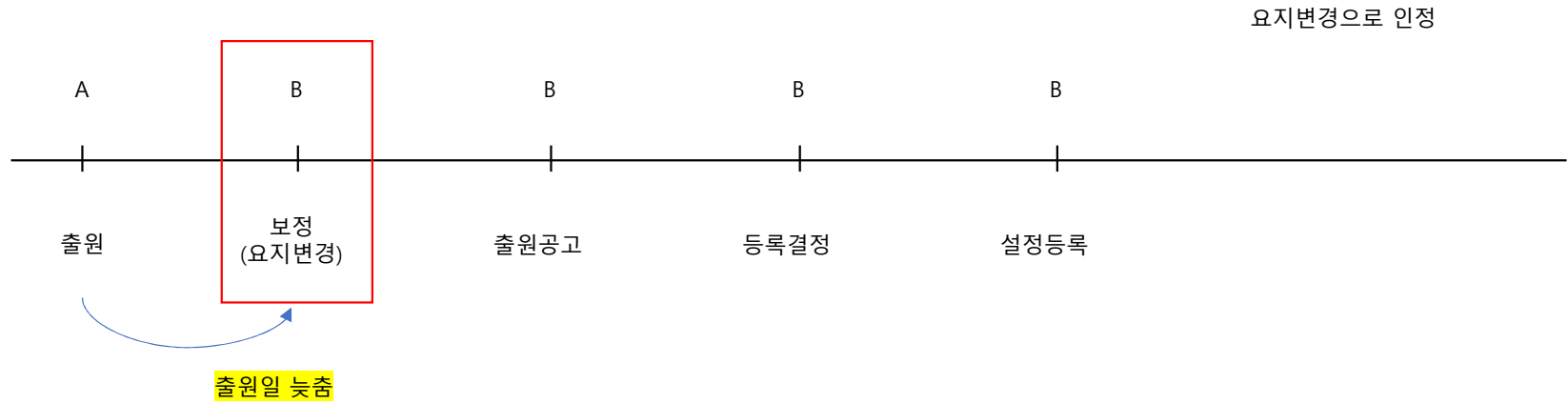
# <요지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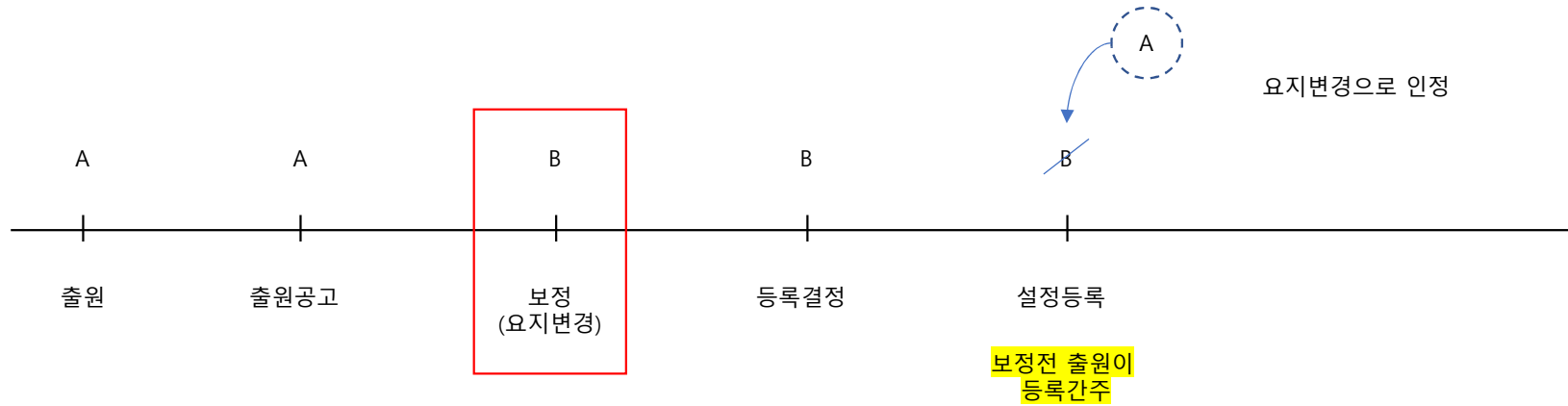


# <설정등록후 요지변경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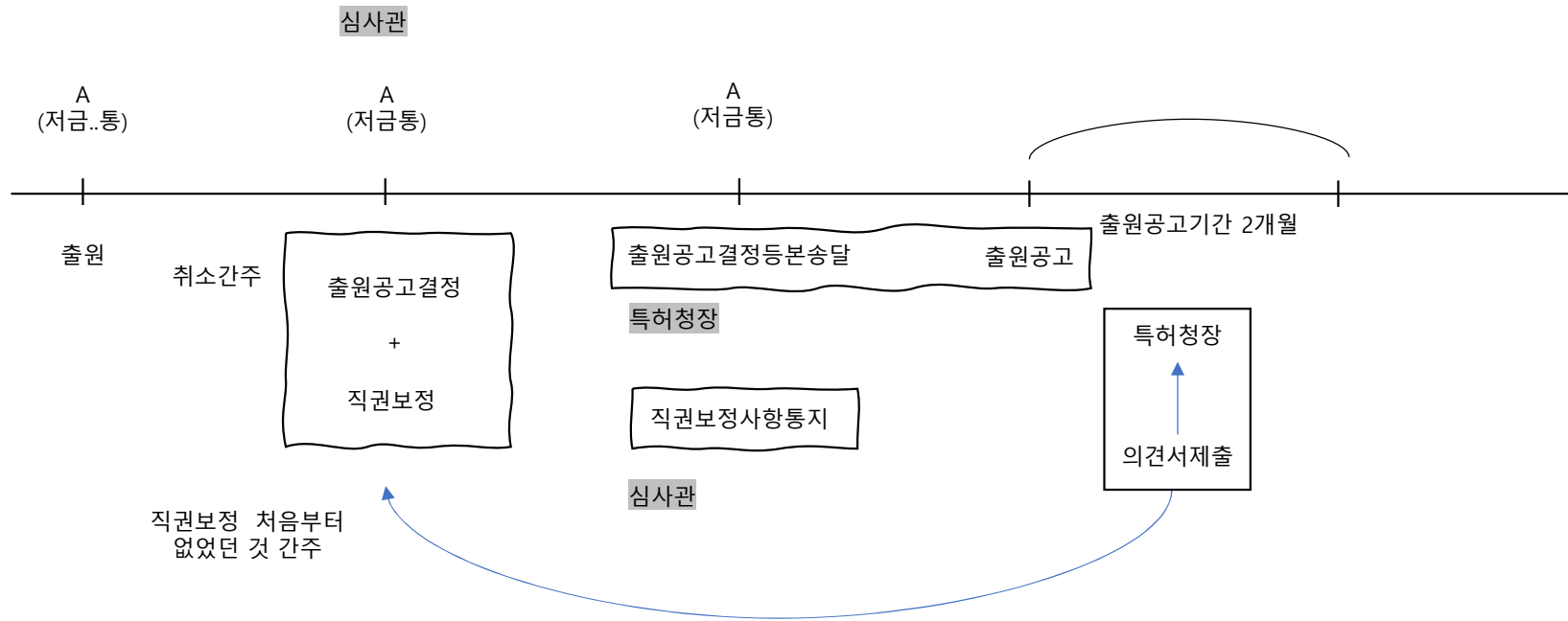
제40조 보정  
(제40조 제3항)



제41조 보정  
(제41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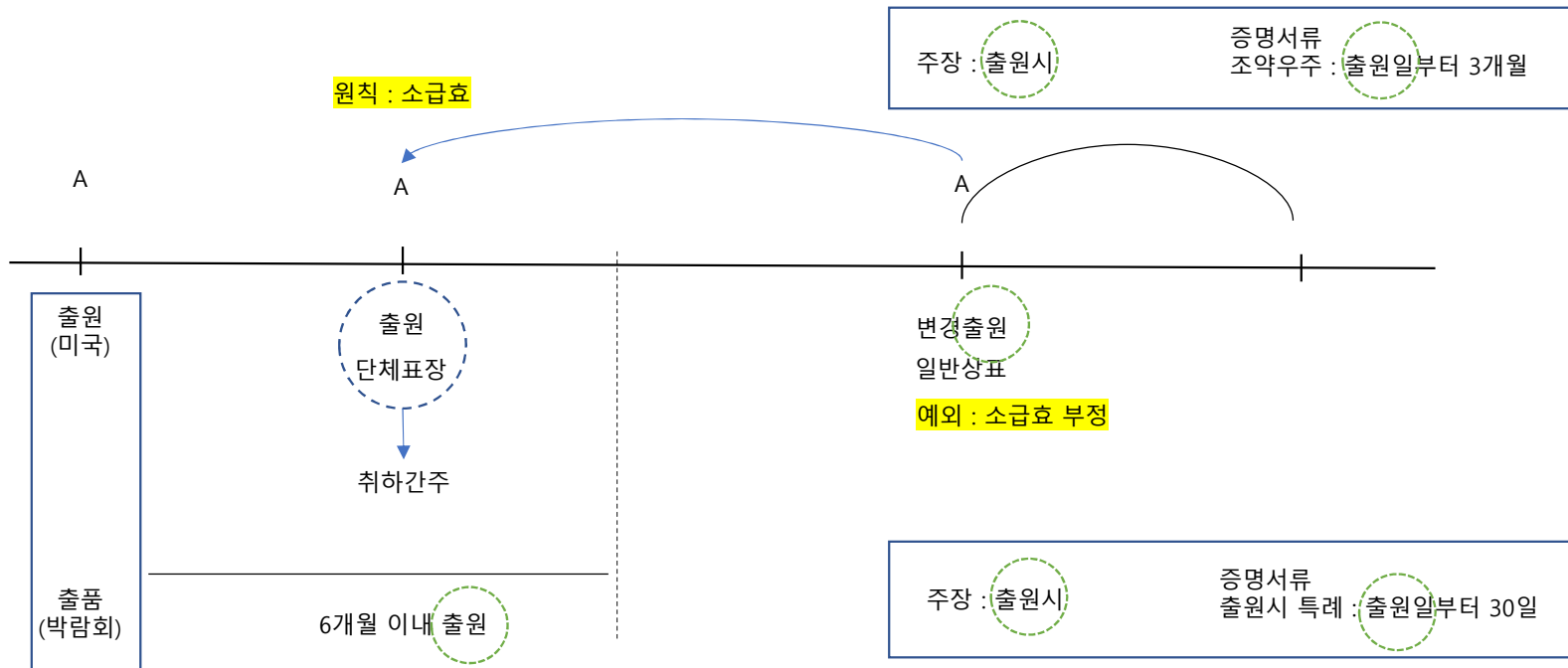


# <직권보정(제59조)>



## < 변경출원(제44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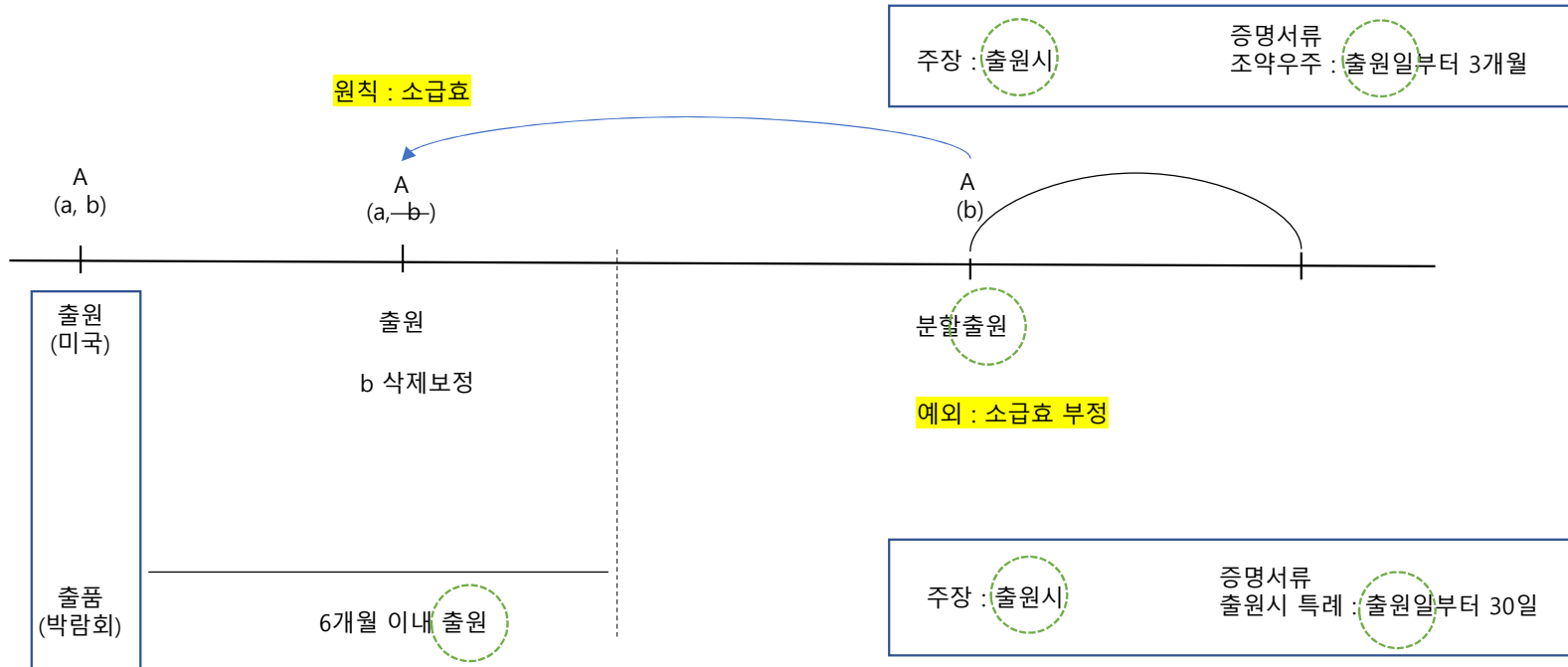
- 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인지 여부
-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 O : 원출원일 기준
  -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 X : 변경출원일 기준



- 박람회 출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인지 여부
- 원출원이 특례 주장 O : 원출원일 기준
  - 원출원이 특례 주장 X : 변경출원일 기준

## <분할출원(제45조)>

- 미국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원인지 여부
-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 O : 우선권 주장간주+ 증명서류 제출간주
  -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 X : 분할출원일 기준



- 박람회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 출원인지 여부
- 원출원이 특례 주장 O : 특례 주장간주+ 증명서류 제출간주
  - 원출원이 특례 주장 X : 분할출원일 기준

<변경, 분할 출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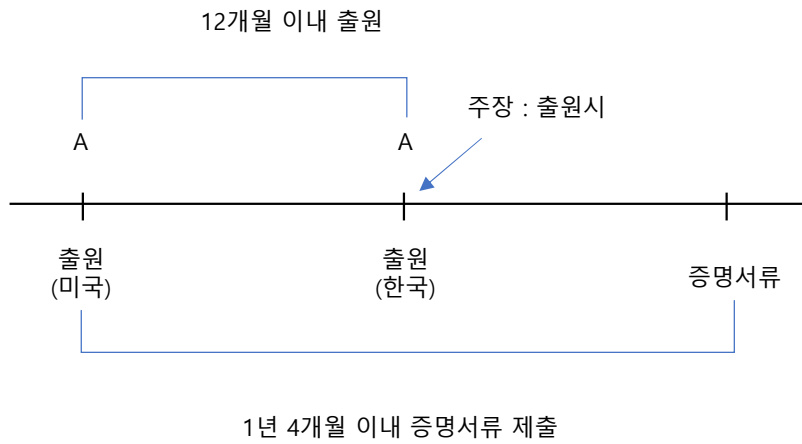
		변경출원(제44조)	분할출원(제45조)	출원의 분할이전(제48조)	상표권 분할(제94조)	상표권의 분할 이전(제93조)
의의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 (주체변경無)	지정상품 별로 분할하는 제도 (주체변경無)	지정상품을 분할이전 <b>(주체변경有)</b>	지정상품 별로 분할 (주체변경無)	지정상품 별로 분할이전 <b>(주체변경有)</b>
태양		<b>상단증/ 추가</b> / 지표단, 지표증, 업무표장	-	-	-	-
요건	주	원출원인, 정당한 승계인 임의대리인(상표관리인): 특별수권 필요(제7조) 공동출원: 전원(제13조)	원출원인, 정당한 승계인 임의대리인(상표관리인): 특별수권 불요 공동출원: 전원(십)	-	-	-
	객	원출원 계속 중 동일성 유지	원출원 계속 중 원출원 범위내(포괄명칭)	<b>유사상품 함께 이전(제2항)</b>	-	<b>유사상품 함께 이전(제1항)</b>
	시	<b>원출원의 등록여부 확정 X (제4항)</b> <b>추가출원: 등록상표(제2항 단서)</b>	<b>보정시기(제40조 및 제41조)</b>	출원 계속 중	<b>무효심판 청구된 경우에는 심 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 이 소멸된 후에도 가능(제2항)</b>	권리 존속 중
절차		변경출원서(취지 기재) 제출 상표건본 X	분할출원서(취지 기재)제출 상표건본 X, 삭제보정	-	-	-
효과	적	<b>출원일 소급. 단 조약우주, 출원시 특례(제3항)</b> <b>원출원 취하 간주(제5항)</b>	<b>출원일 소급. 단 조약우주, 출원시 특례 (제2항)</b> 독립성	출원일 소급. 조약우주, 출원시 특례(제5항)	-	-
	부	시기위반: 반려 지정상품의 추가 등의 여지가 없음	시기위반: 반려 분할불인정예고통지, 분할 출원일 기준	시기위반: 반려 (제2항 위반시) <b>거정이무</b>	-	시기위반: 반려 (제1항 위반시) <b>제119조 제1항 제4호</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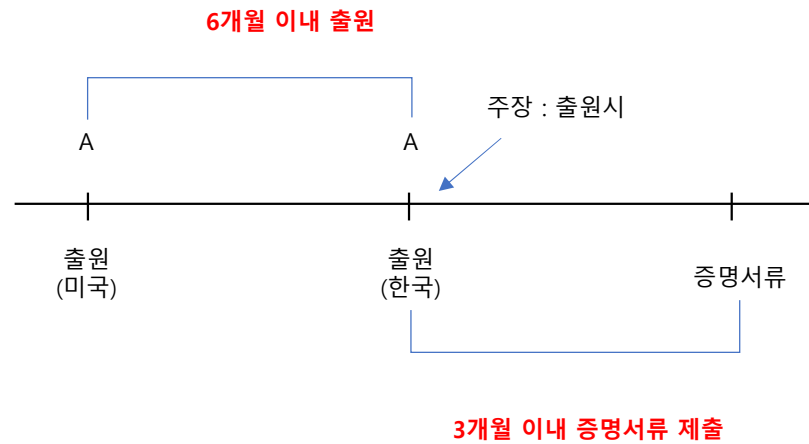
재분할 출원 가능  
(최초 출원일로 소급)

# <조약우선권(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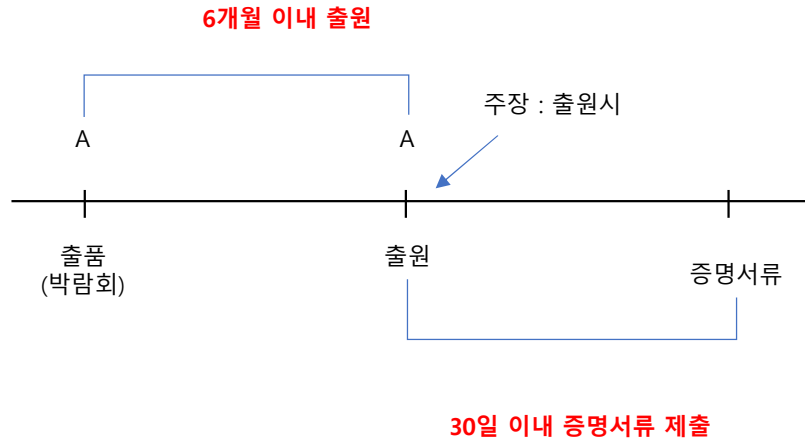
## 특허법 제54조



## 상표법 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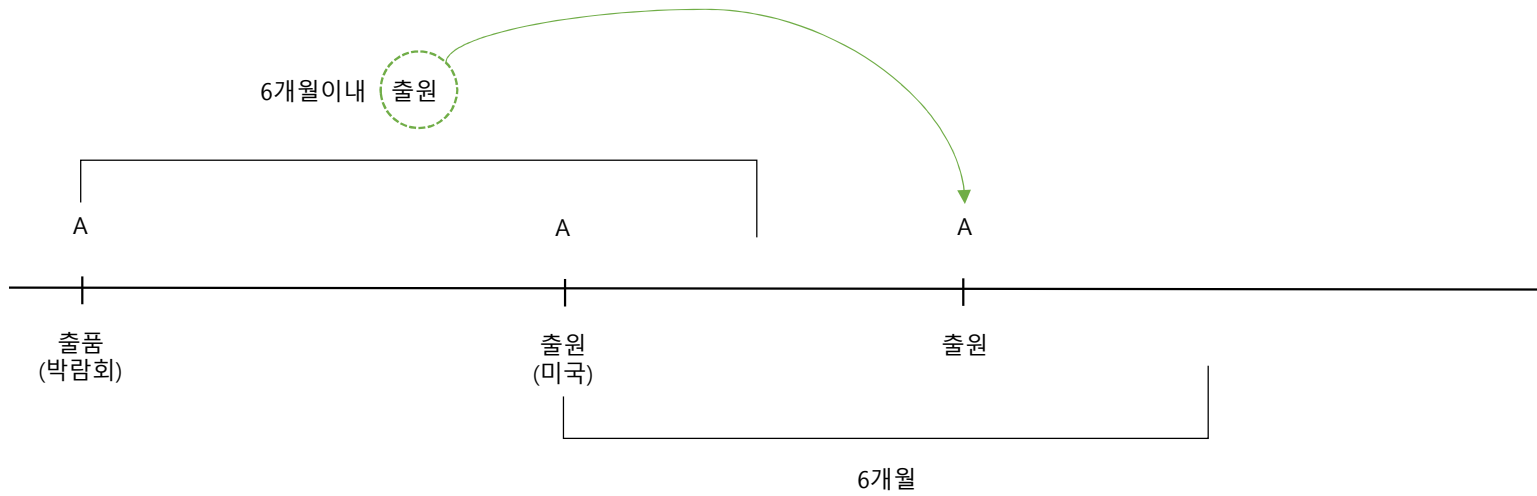


<출원시 특례(제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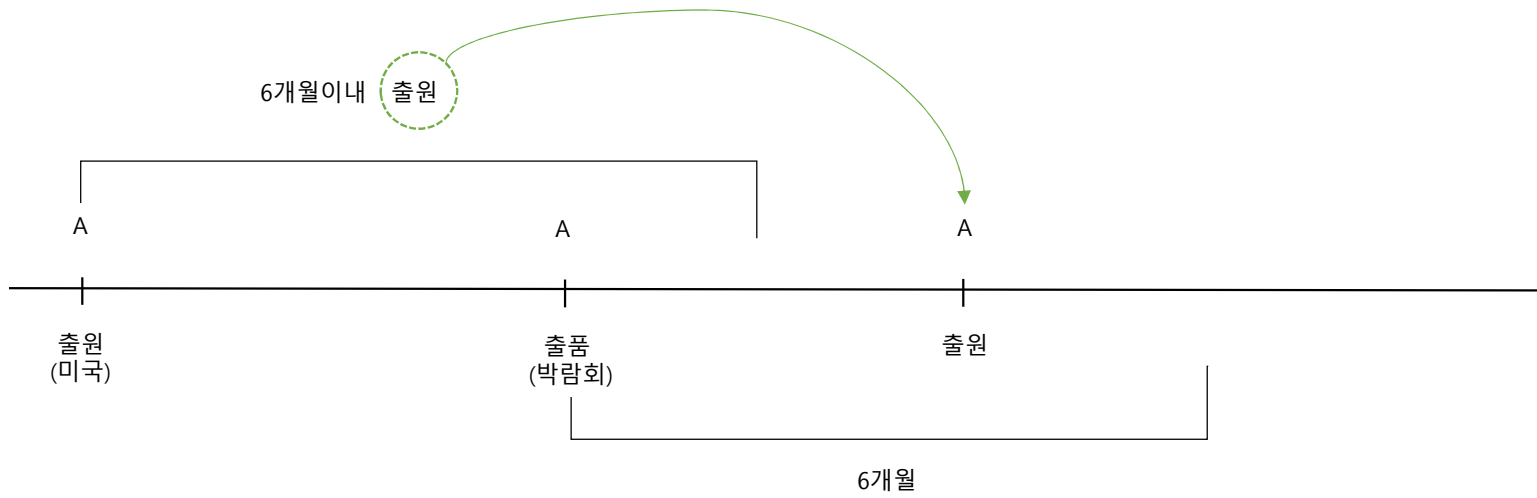


<제46조 & 제47조 모두 주장>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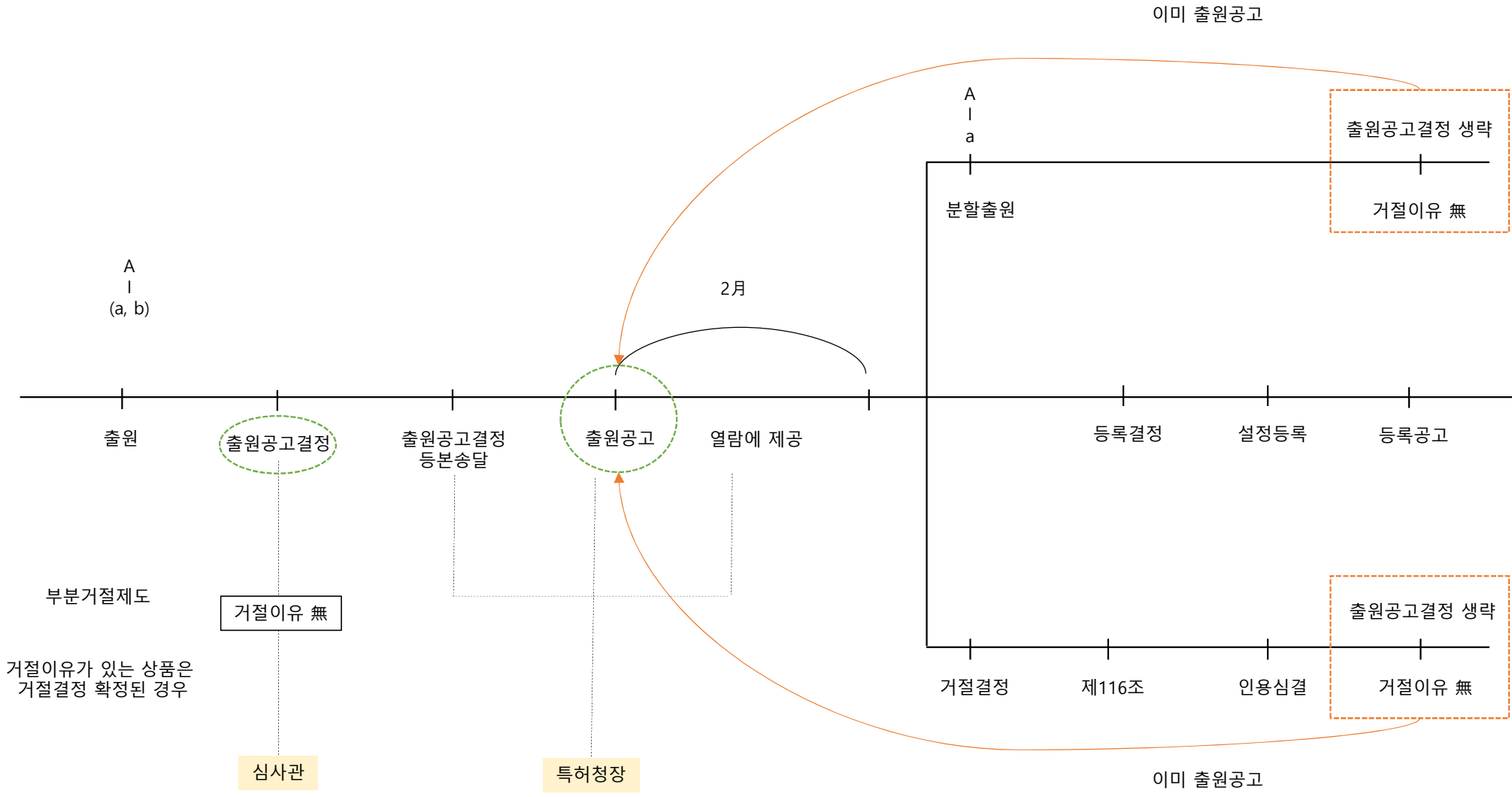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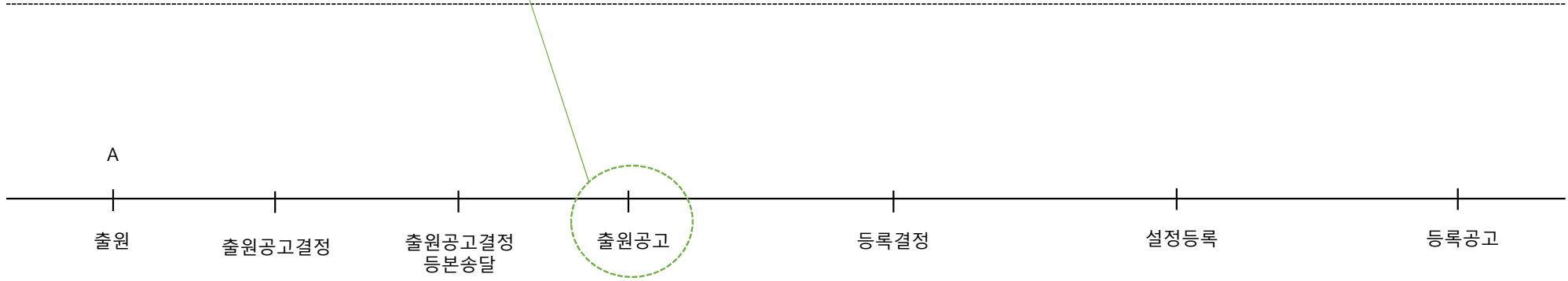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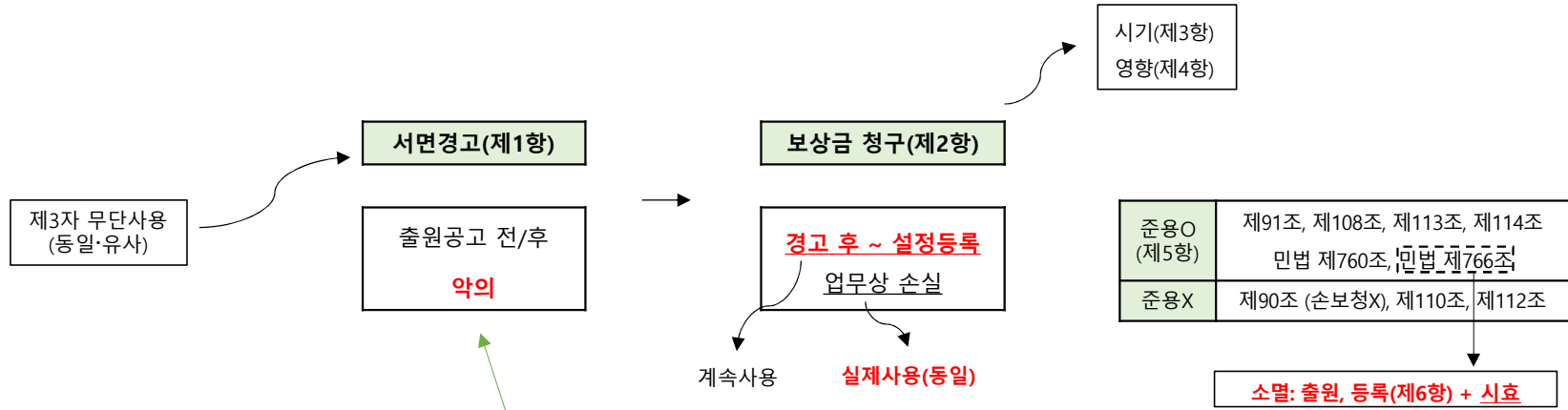




# <출원공고제도(제5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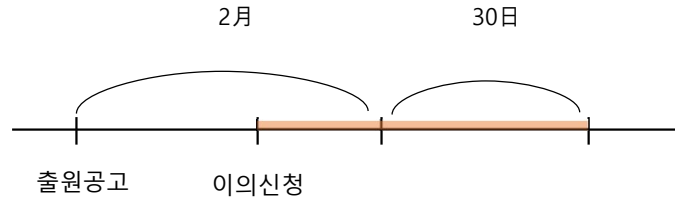
#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 <이의신청>

## 이의신청(제60조)

주	누구든지
객	거절이유(통상, 추가)
시	출원공고기간
절	신청서 + 필요한 증거



신청인, 대리인, 대상, 사항  
이유 및 필요한 증거 표시

보정 (제61조)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특허청장  
(제출)

심사		
주체 (제62조)	심사관합의체(심사관 3, 中 심사장1) 합의(과반수, 비공개) By 특허청장이 지정, 교체 사무총괄	
범위 (제63조)	이유(주장X), 의견진술기회	
생략	경합 (제65조)	2이상 중 어느 하나에 이유 有 심사관합의체(생략가능) 특허청장(등본송달) 병합분리 (제64조)
	직권 (제67조)	직권거절결정 심사관합의체(생략가능) 특허청장(등본송달)

## 결정(제66조)

부분송달 및 답변서(제1항)  
이의신청서 부분(출원인)  
답변서 제출기회(지정기간)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 제3항)  
답변서 제출기간, 이의신청기간  
서면 + 이유(지정상품 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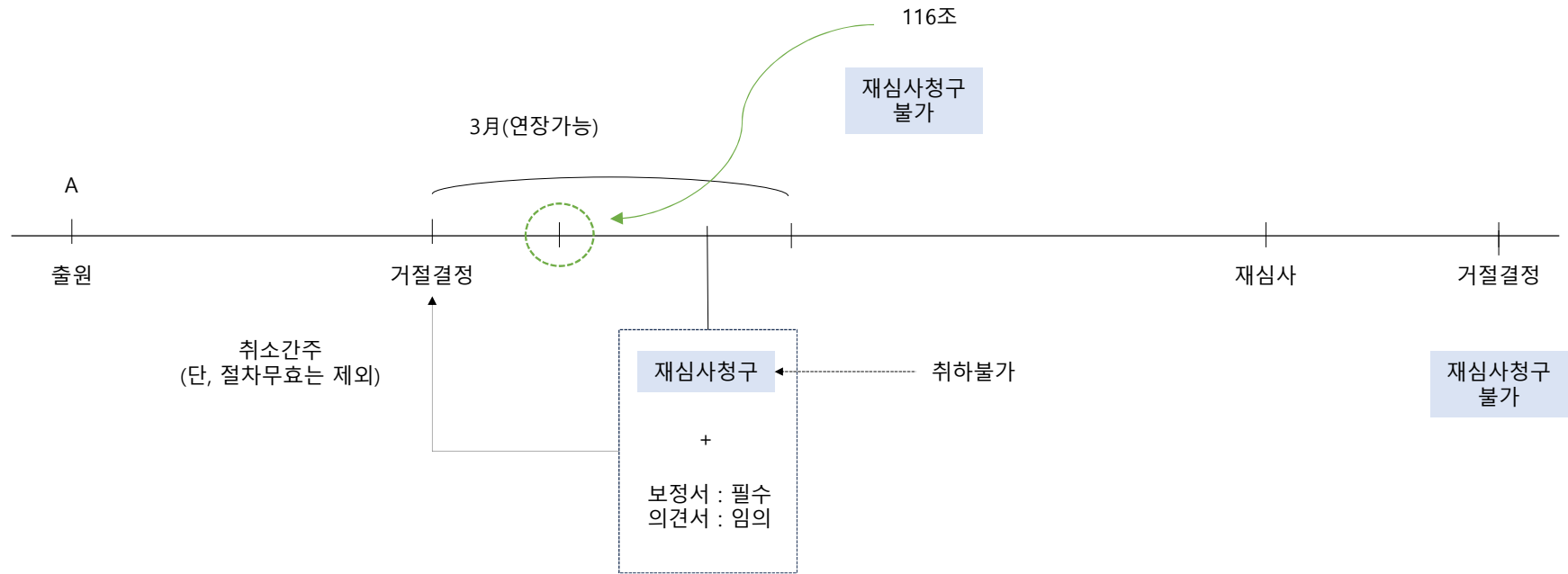
각하결정(제4항)  
이유나 증거X(보정기간이 지난 후)

등본송달(제5항)  
(출원인, 이의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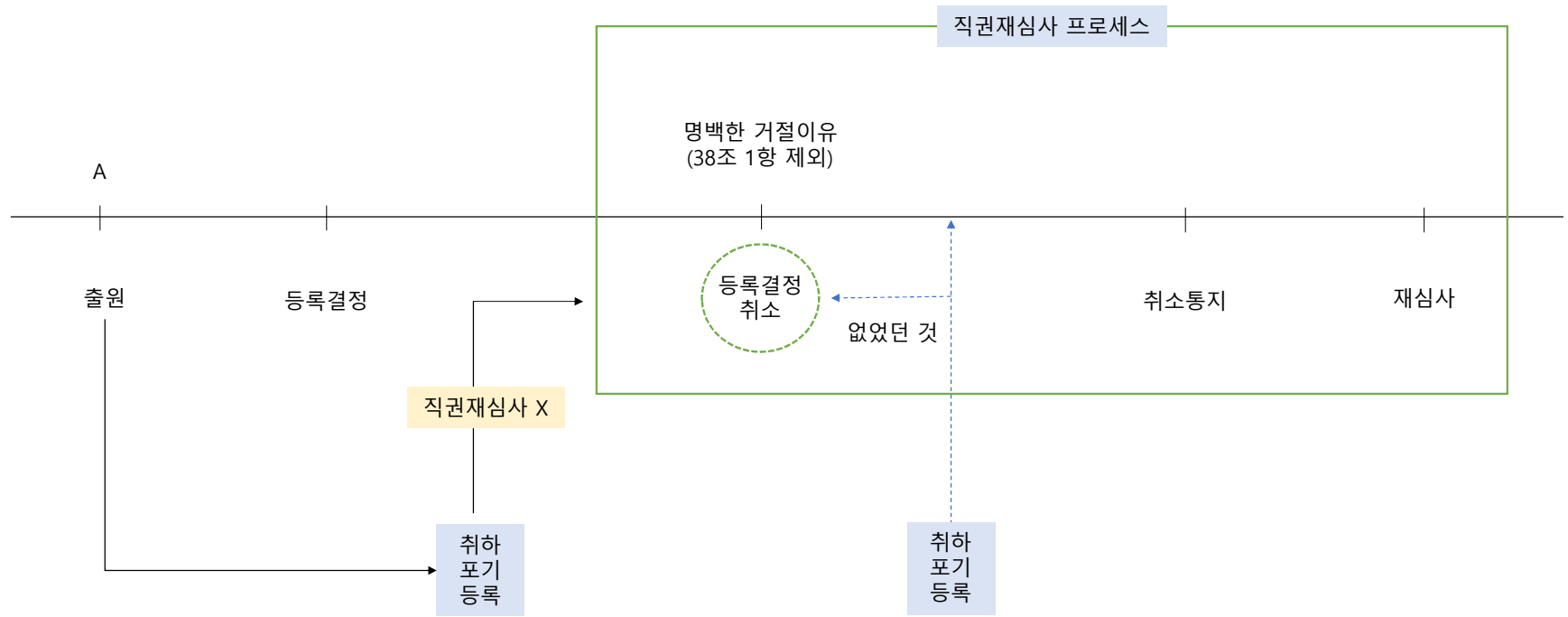
불복(제6항)  
거불심, 무효심판

등본송달(제4항)  
(이의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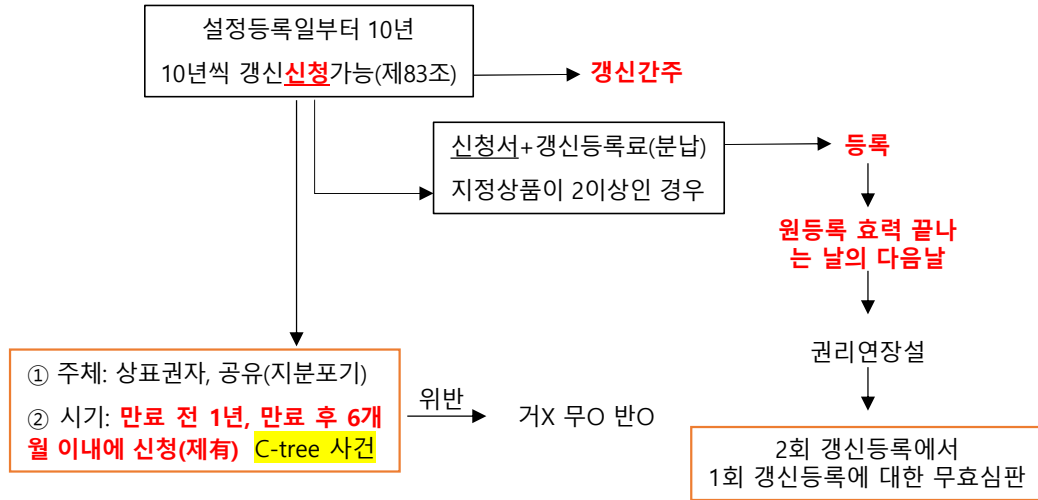
<재심사의 청구(제54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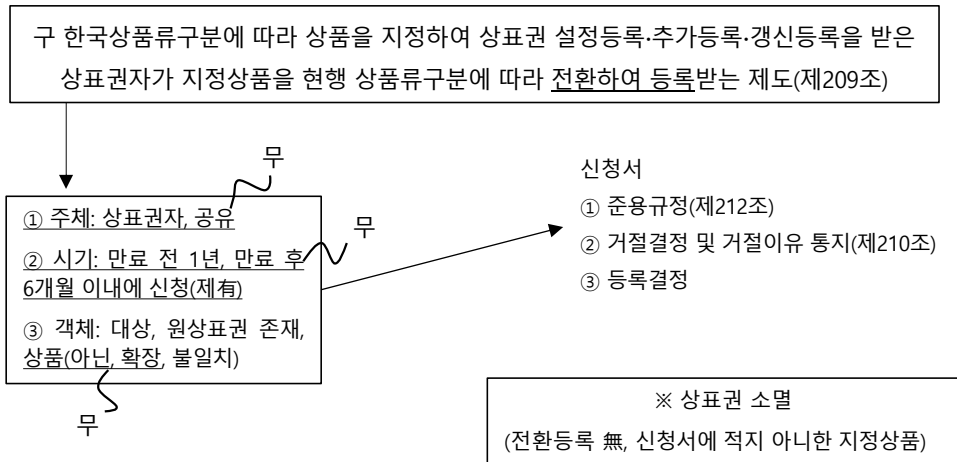
<직권 재심사(제68조의2)>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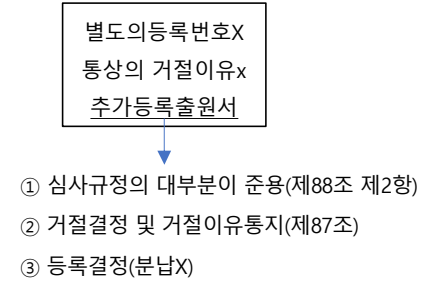


###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상표권자(출원인)이 등록상표(출원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제86조) 유지(반대는 독자성)



### <상표권의 효력>

		내용
효력 범위		① 시간적(83조) ② 객관적(92조) ③ 지역적
적극	독점적 사용권	① 내용: 제89조 본문 ② 제한: 제89조 단서,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수익, 처분권 등	① 내용: 상표권은 이전 가능하고, 사용권 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포기를 할 수 있음 ② 제한 가. 이전 제한 등(제93조) 나. 사용권 설정불가(제95조 제2항, 제97조 제5항), 다. 상표권 포기(제102조 제1항)
소극	사용금지	① 내용(제108조) ② 제한 가. 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제77조) 나.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제160조) 다. 제90조 (효력제한사유) 라. 기타(사용권, 권리소진 및 진정상품병행수입,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권리남용 또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권리에 기초한 권리행사의 권리남용 등)
	등록배제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 <권리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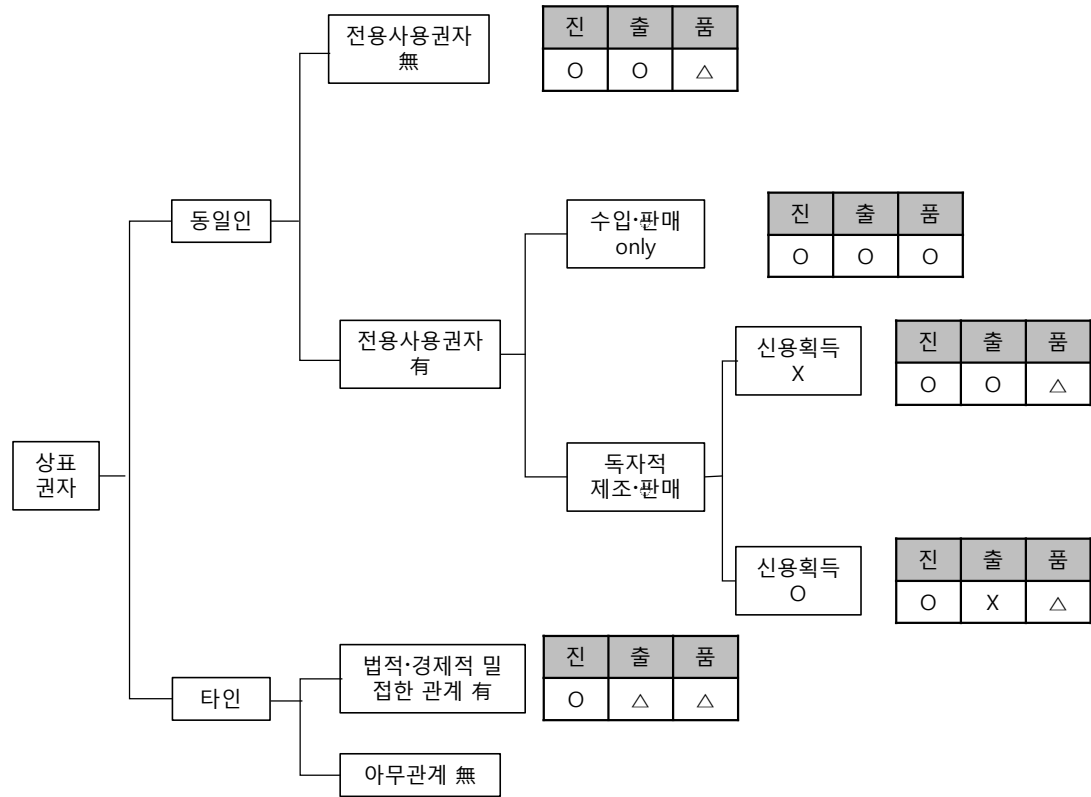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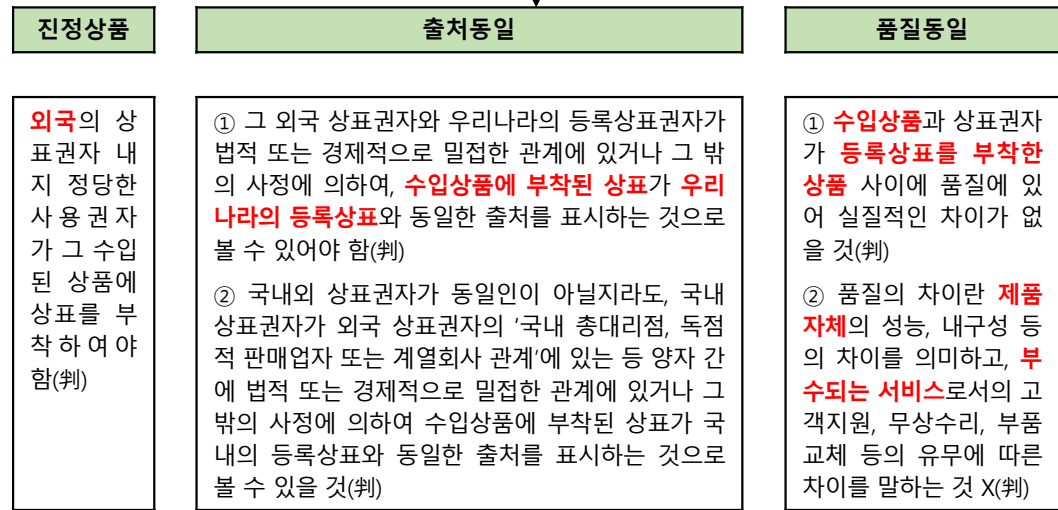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음(判)

- (1) 원동가수실생(判)
- (2) 상객이취기(判)

### <진정상품병행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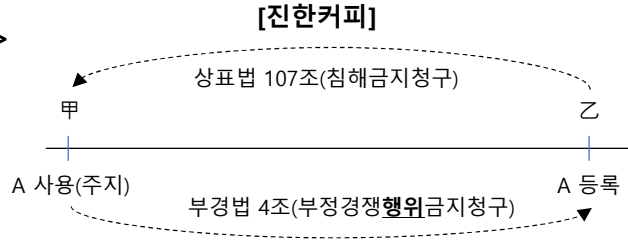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상품을 국내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상표기능론



※ 소분행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임(判)  
 ※ 적극적 광고행위(判)  
 ① 상표권 침해X  
 ② 부경법 2조1호나목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허용)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불허)

<권리남용>



[사임당]

[상표권의 적극적 행사가 권리남용]

1. 부정경쟁방지법 15조 및 판례

(1) 상표법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상표법에 따른다.

(2)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15조는 상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상표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상표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검토  
(구)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개정된 취지상 판례 타당하다.

2.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상표법 89조)

(1)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2) 판례  
자타상품식별의사로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타인의 주지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음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후 등록상표의 사용은 비록 상표권자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법을 남용한 것으로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3) 검토  
상표법은 출처혼동 방지를 목적(1조)으로 하는바,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이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킨다면, 권리남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표권의 소극적 행사가 권리남용]

1. 판례

(1)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불허된다.

(2) 주관적 요건 불요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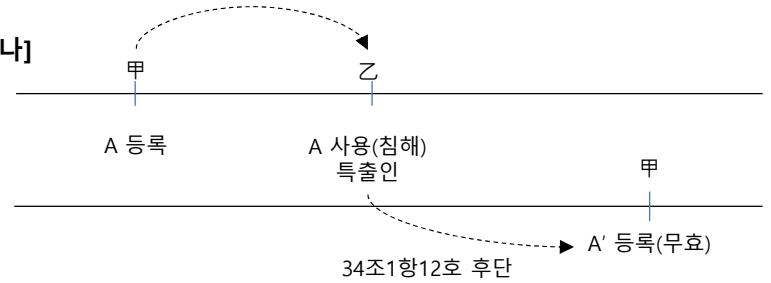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바(1조), 권리행사가 상표권자의 출원 등록 목적과 경위, 상표권 행사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목적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

상표법 107조(침해금지청구)

[카타나]



1. 상표권 침해로 얻은 신용

(1) 판례

상표 출원·등록 이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검토

상표권 침해로 얻은 신용은 보호가치가 없고, 그러한 신용의 보호는 등록주의의 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판례 타당하다.

2. 후발선사용상표

(1) 판례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후에 등록된 후행 등록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고, 후행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타인의 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이러한 후발 선사용상표와 관계에서 후행 등록상표가 34조1항12호 후단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행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화되거나 침해를 면하는 것 아니다.

(2)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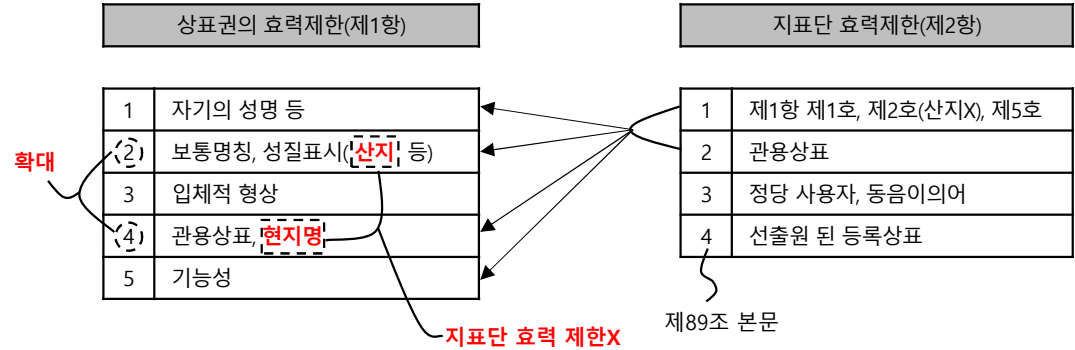
34조1항12호 후단은 수요자 혼동 방지 취지로서 후발 선사용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간접적·반사적인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례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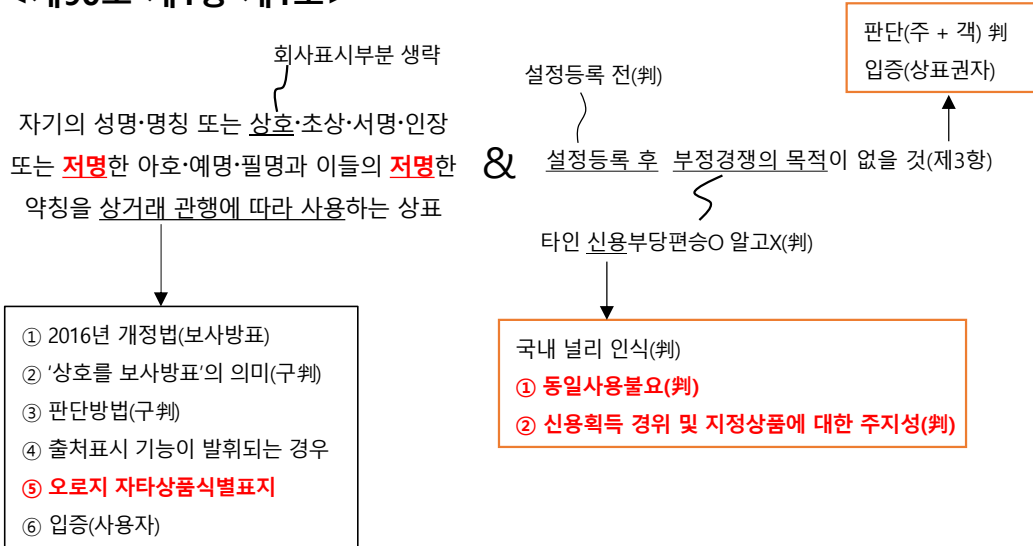
### <권리남용>

	내용
신의칙 反	① 상표권 행사가 법적보호가치 X (判) ② 주관적 요건 불요(判)
무효사유	① 공정력(判) ② 권리남용항변(判) ③ 법원의 판단 가부(判)
취소사유	권리남용항변을 배척(判)
침해로 얻은 신용	① 침해상표가 수요자에게 인식된 경우(判) ② 후발선사용상표(判)
부정경쟁행위와 권리 남용	① 등록된 주지상표 침해 ② 상표법과 부정경쟁이 저촉하는 경우 (判) ③ 상표권 적극적 사용이 권리남용인 경우(判) ④ 지역적 주지표지(判)
기타	① 상표권 이전등록하지 않은 양도인의 권리행사(判) ② 외국권리자의 상표를 등록 받은 후 권리행사-영업양도 ③ 외국권리자의 상표를 등록 받은 후 권리행사-국내총판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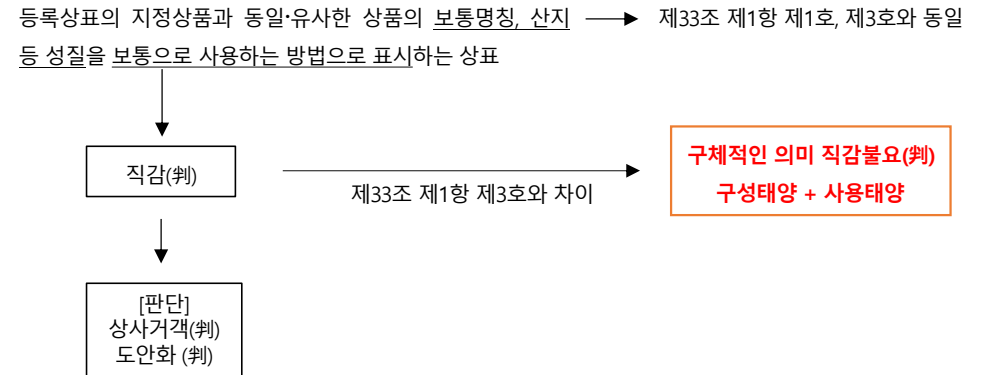
### <제90조> → 결합상표 일부O, 독립적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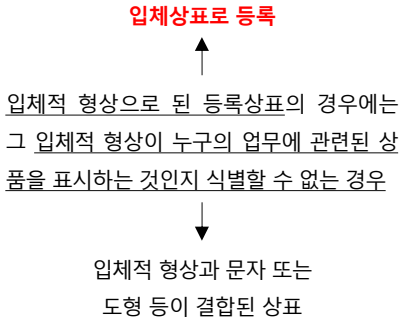
### <제90조 제1항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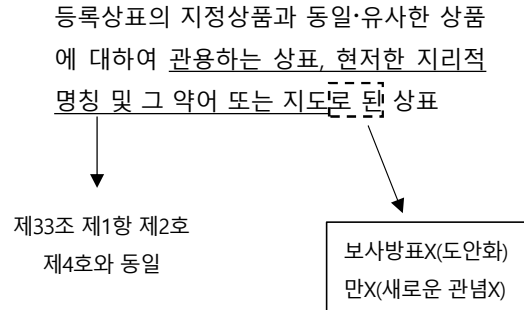
### <제90조 제1항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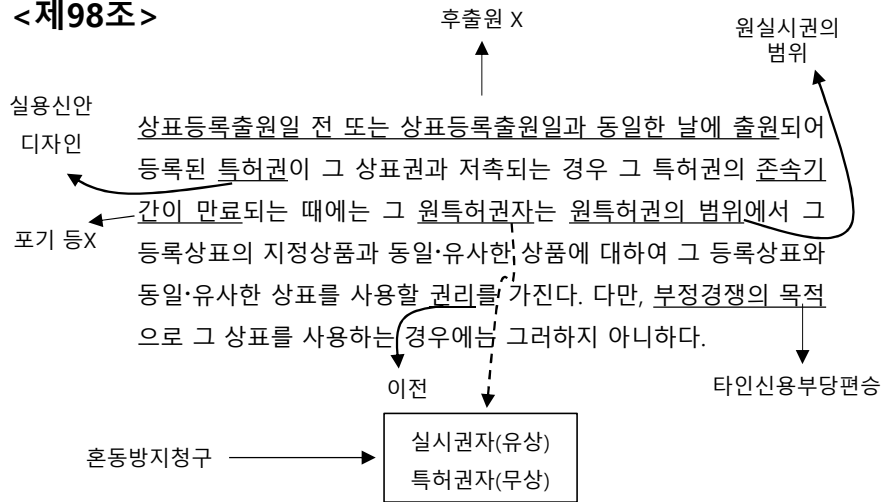
<제90조 제1항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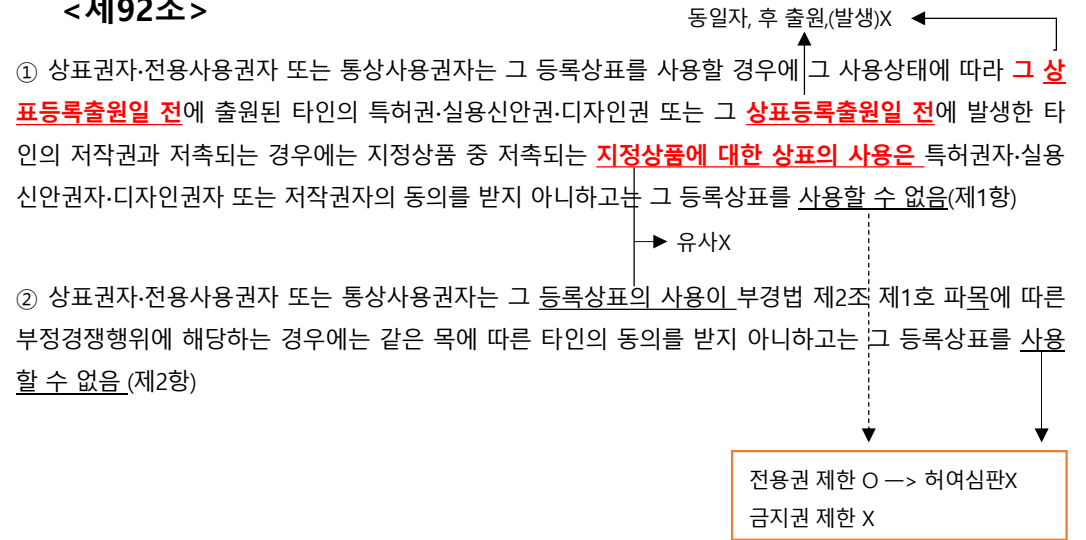
<제90조 제1항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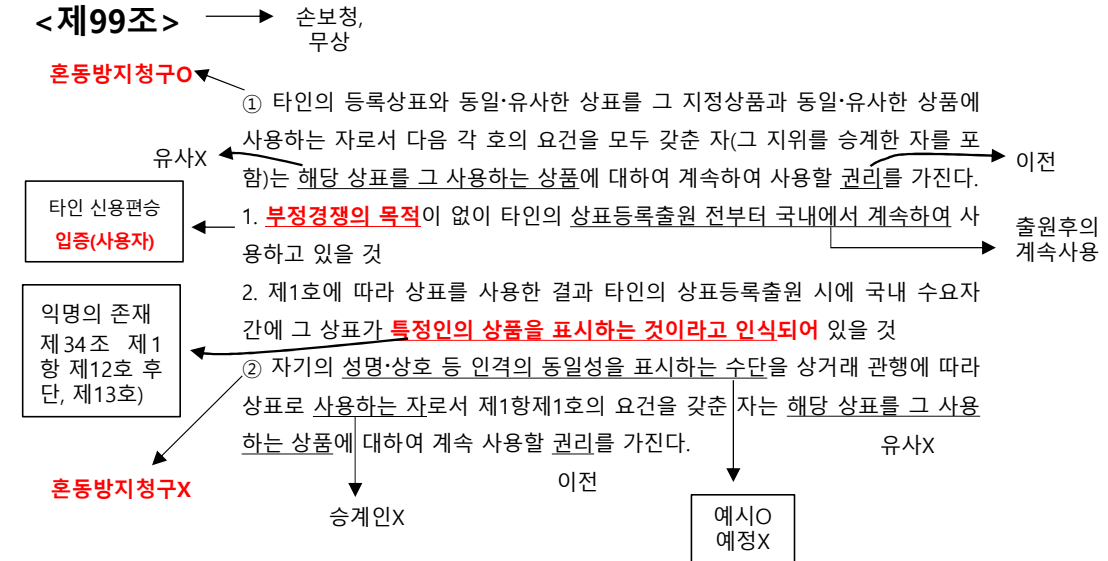
<제98조>



<제92조>



<제99조>



### <상표권의 이전>

		내용
의의		상표권자만이 변경
태양	발생원인	일반승계, 특정승계
	이전범위	전부승계, 일부승계
절차	특정승계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이전등록
	일반승계	i) 당연 이전 + 취지신고 ii) 이전등록
효과	하자승계	내용 및 하자의 동일성 유지
	부수권리	영향X
	절차효력	상표권·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해 넓은 절차효력
	절차속행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음
제한	필요성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
	제한사유 (제93조)	① 지정상품의 분할 이전(제1항)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제2항) ※ 제3항 ③ 업무표장권(제4항) ④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라)목 단서, 제3호 단서(제5항) ⑤ 단체표장(제6항) ⑥ 증명표장(제7항)
	위반	취소사유, 극복가능
청산법인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 소멸
분할 후 이전		제93조 제1항 후단을 잠탈 염려 有
이전등록청구권		① 이전등록청구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 여부 ② 이전등록청구권자의 사용으로 주지상표가 된 경우 소멸시효 주장의 제한 여부

### <상표권의 공유>

		내용
의의		공동소유
법적성질		민법상의 준공유 + 합유적 성질
제한	지분양도 질권설정	전원의 동의
	사용권	전원의 동의
	전환, 추가	전원
	심판청구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전원)
	심결취소소송	① 공유자 중 1인의 원고적격(유필공)(判) ② 공유자 중 1인의 피고적격(고필공)
지분포기		자유. 지분의 비율로 귀속(민법 제267조)

### <사용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의의, 성격	독점. 준물권적	비독점. 채권적
발생	계약(등록X)	계약(등록X) ※ 법정]
내용	①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죄 ② 제90조,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③ 공유: 지분이전, 질권설정, 통상사용권 (전원동의)	①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죄X ② 제90조X, 제92조 제1항 및 제2항O ③ 공유: 지분이전, 질권설정(전원 동의)
이전 등	이전(일반X), 질권, 통상사용권 설정(상표권자 동의)	이전(일반X), 질권(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동의)
소멸	포기 등(질권자, 통상사용권자 동의)	포기 등(질권자 동의)
등록	[제100조] ① 등록이 제3차 대항요건 - <b>정당한 이익(무단X)</b>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이(일반X)·변·소(포기)·처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이(일반X)·변·소(포기)·처 ② 등록 후 상표권 양수인 등 ③ 일반승계 취지신고	
상표권자에 대한 권리	① 포기에 대한 동의권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등록료 대납	
의무	성명·명칭을 표시의무	
업무표장 등	<b>업·단·중·사용권X</b>	

### <질권>

내용	
질권대상	i)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또는 그 지분 ii) <b>업무표장권,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단서 또는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X</b>
설정방법	i)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ii) 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iii) 공유 iv) 전용사용권자 v) 통상사용권자
효력	i) 대가나 물건(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 ii) 동의를권 iii) 사용불가(특약 가능)
등록	i) 상표권에 대한 질권 설·이(일반X)·변·소(혼동X)·처는 등록이 효력 발생요건 임. 일반승계(취지신고) ii)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에 대한 질권 설·이(일반X)·변·소(포기)·처는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 임. 일반승계(취지신고)
통상사용권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제104조의 2)

### <침해>

내용		
의의	전용권, 금지권	
침해의 특수성	상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	
유형	전용권 침해	상표바꿔치기
	금지권 침해	i) 동일, 유사 ii) 기호 등에 색채가 결합된 상표 iii) 법정손해배상청구
	침해로보는 행위	① 상표권 ② 지표단
침해요건	유효한 권리	일응유효
	상표적 사용	형식적 + 실질적
	보호범위내 사용	동일 또는 유사
	정당한 권원	① <b>사용권: 주종관계</b> ② <b>제89조 본문(동일영역, 개별로 상표등록 받고 조합사용)</b>
	효력제한	제90조 등
기타	권리소진, 진정상품병행수입, 권리남용	

### <상표권 소멸>

내용	
상속인	i) 상속인 부존재 ii) <b>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b>
법인의 소멸	<b>청산중결등기일의 다음날</b>
기타	i) 존속기간만료 ii) 분할납부 iii) 포기 iv) 상품분류전환등록 v) 취소 vi) 무효

### <침해에 대한 구제>

내용		
민사적	침해금지청구	① 의의 침해금지, 예방, 부대청구 ② 요건 i) 고의·과실X ii) <b>사실심변론종결시</b> ③ 청구권자 i)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통X) ii) 공유 iii)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상표권자(判) ※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는 침해금지청구O, 침해예방청구X
	임시조치	소 제기/ 신청/ 담보
	손해배상청구	후술
	법정손해배상청구	후술
	신용회복청구	고의·과실/ 청구
	가처분	침해금지의 가처분
형사적	침해죄	i)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ii) 고의(인식O, 부당한 이득X) iii) 고의추정(제112조)X iv) 비친고죄
	양벌규정	침해죄(제230조), 거짓 표시의 죄(제233조), 거짓 행위의 죄(제234조)
	몰수	침해물과 제작 용구·재료는 몰수.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별 척 규 정	비밀유지명령 위반	i)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ii) 친고죄
	위증죄	i)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ii) 자수
	거짓 표시죄	i)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ii) 제224조
	거짓 행위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태료	제237조

### <손해배상청구>

		내용
의의, 취지	제109조, 침해시	
요건	i) 침해: 침해예방청구X,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O ii) 고의·과실: <b>고의추정(제112조), 과실추정(判)</b> iii) <b>손해 발생</b> iv)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제110조 제1항
	추정	①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② 침해자의 이익액: <b>한계이익(判)</b> ③ <b>손해 발생(判)</b> i) 손해 발생 없는 경우 ii) 추정 X iii) 주장·입증 등록상표 사용(유사X) +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判) / 염려 내지 개연성(동종의 영업) ④ 인과관계 입증불요(判)
	합리적인 사용료	① <b>합리적인 사용료, 초과액, 고의·중과실</b> ② <b>손해 발생</b> i) <b>손해발생이 없는 경우 ii) 추정X</b> iii) 주장·입증 <b>침해 사실 + 사용료상당액 + (손해발생 사실을 구체적 X) / 염려 내지 개연성(동종의 영업)</b>
	재량	① 변론전체의 취지 + 증거조사의 결과 ② 손해 발생 i) 손해발생이 없는 경우 ii) 추정X iii) 손해 발생의 주장·입증 등록상표 사용 +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判)

### <비밀유지명령>

		내용
의의, 취지	소명(영업비밀+ 사용·공개 제한의 필요성) + 신청 다른 당사자(법인: 대표자), 대리인,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사용 X + 공개X)	
비밀유지명령 제외	영업비밀 이미 취득	
절차	① 비밀유지명령 신청 ② 결정서 송달 ③ 효력 발생 ④ 즉시항고	
비밀유지명령 취소 (제228조)	①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 ② 취소 신청 재판 ③ 취소 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④ 취소 신청 재판의 효력 ⑤ 취소하는 재판을 한 경우 조치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제229조)	① 소송기록 열람 등 청구 통지 ② 열람 제한 ③ 열람 가능	
위반죄	전술(제231조)	

###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내용
의의, 취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성 영역의 침해에 대해서, 1억(고의:3억)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변론전체의 취지 + 증거조사의 결과	
판단방법	엄격(判)	
제109조와 관계	① 선택적 ② 청구의 변경: i)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ii)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10조 제6항과 차이점	손해발생의 입증, 동일·유사영역의 침해에 적용가능	

### <심판>

	내용
방식심리	① 심판장 보정명령 ② 결정으로 각하(서면+이유)
부분 송달 등	① 부분송달 + 답변서 ② 답변서 부분 송달 ③ 당사자 심문
심리방식	① 심판관 합의제, 구술·서면심리 ② 심판의 진행 ③ 직권심리(의견진술기회) + 한계
부적법	각하심결
심결	① 심결로 종결 ② 서면+기명날인 ③ 심리종결통지 ④ 재개(직권, 신청) ⑤ 20일 ⑥ 송달
불복	<b>30일</b>

### <국선대리인(제124조의 2)>

	내용
의의	당사자의 <b>신청</b> 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이유 없음 명백 또는 권리 남용X)
수수료 감면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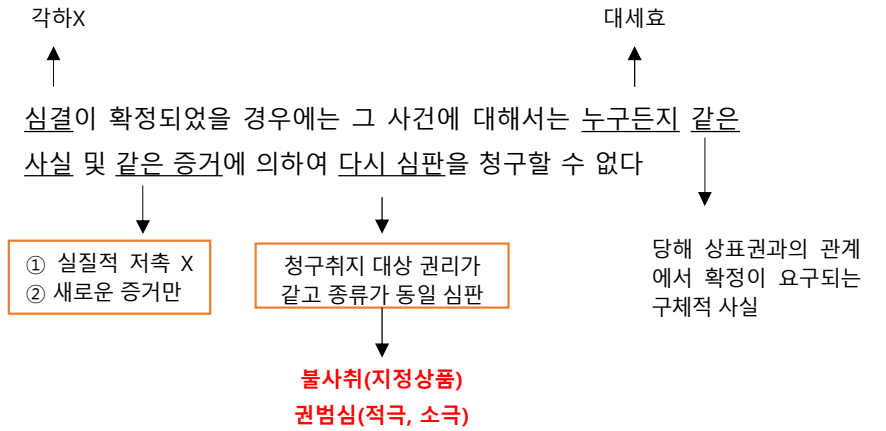
제40조O  
제41조X → 거불심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내용
의의, 취지	거절결정(상표·추가·전환)을 받은 자가 결정등본송달 받은 날부터 <b>3개월 / 전부 또는 일부</b>
법적성질	심급관계X, 속심적 성격
심리범위	전면적 재심리. <b>새로운 거절이유(통지+의견서 제출기회)</b>
심결확정	① 인용심결 확정(자판, 환송) ② 기각심결 확정 ③ 일사부재리X
보조참가	<b>① 참가불허 ② 심취소(判)</b>

### <일사부재리(제150조)> → 심판청구시(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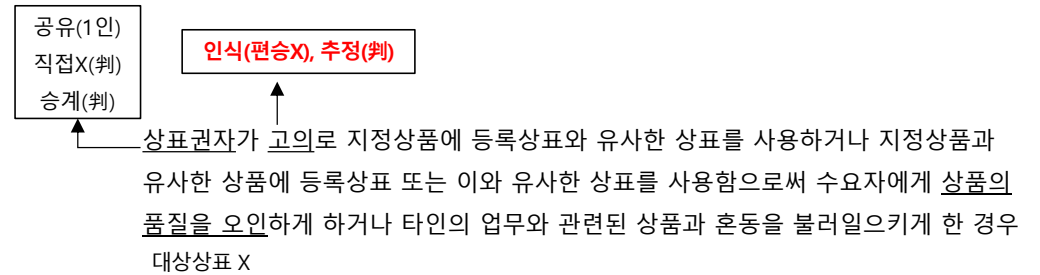
### <무효심판(제117조)>

	내용
의의, 취지	등록상표 소급소멸
무효사유	① 원시적 무효사유 i) 제3조, 제27조, 제33조~제35조, 제48조제2항 후단, 제4항, 제6항~제8항, 제5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제7호 ii) 승계인X iii) 추가등록(원등록, 출원의 소멸) iv) 조약위반 ② 후발적 무효사유 i)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조약위반된 경우 ii) 제33조제1항 (제2항X) iii) 지리적 표시보호 중단
심결확정	① 소급소멸(후발- 해당하게 된 때, 공시된 때) ② 일사부재리 적용
일부무효	인정(判)

### <취소심판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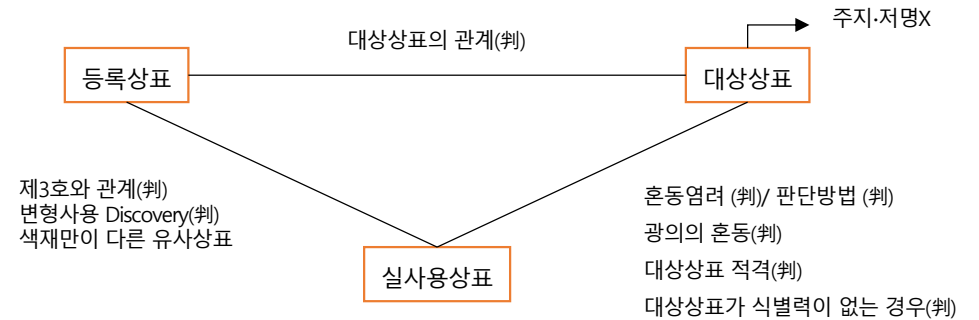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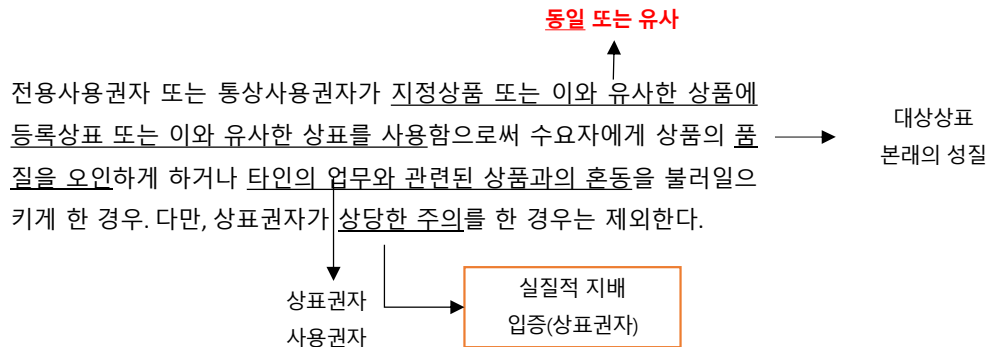
	내용
청구기간	① 제척기간(취소사유 소멸일부터 3년) 제11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제9호 및 제120조 제1항 ② 상표권 소멸
청구범위	전부(일부-제3호)
입증책임	심판청구인(상표권자-제3호)
취소사유 소멸	극복불가(예외- 제4호, 제6호)
당사자	청구인: 누구든지(예외- 제4호, 제6호) / 피청구인: 상표권자
심결확정	장래소멸(제3호- 심판청구일)
심판장 통지	전용사용권자, 기타 등록권리자에게 통지

### <제119조 제1항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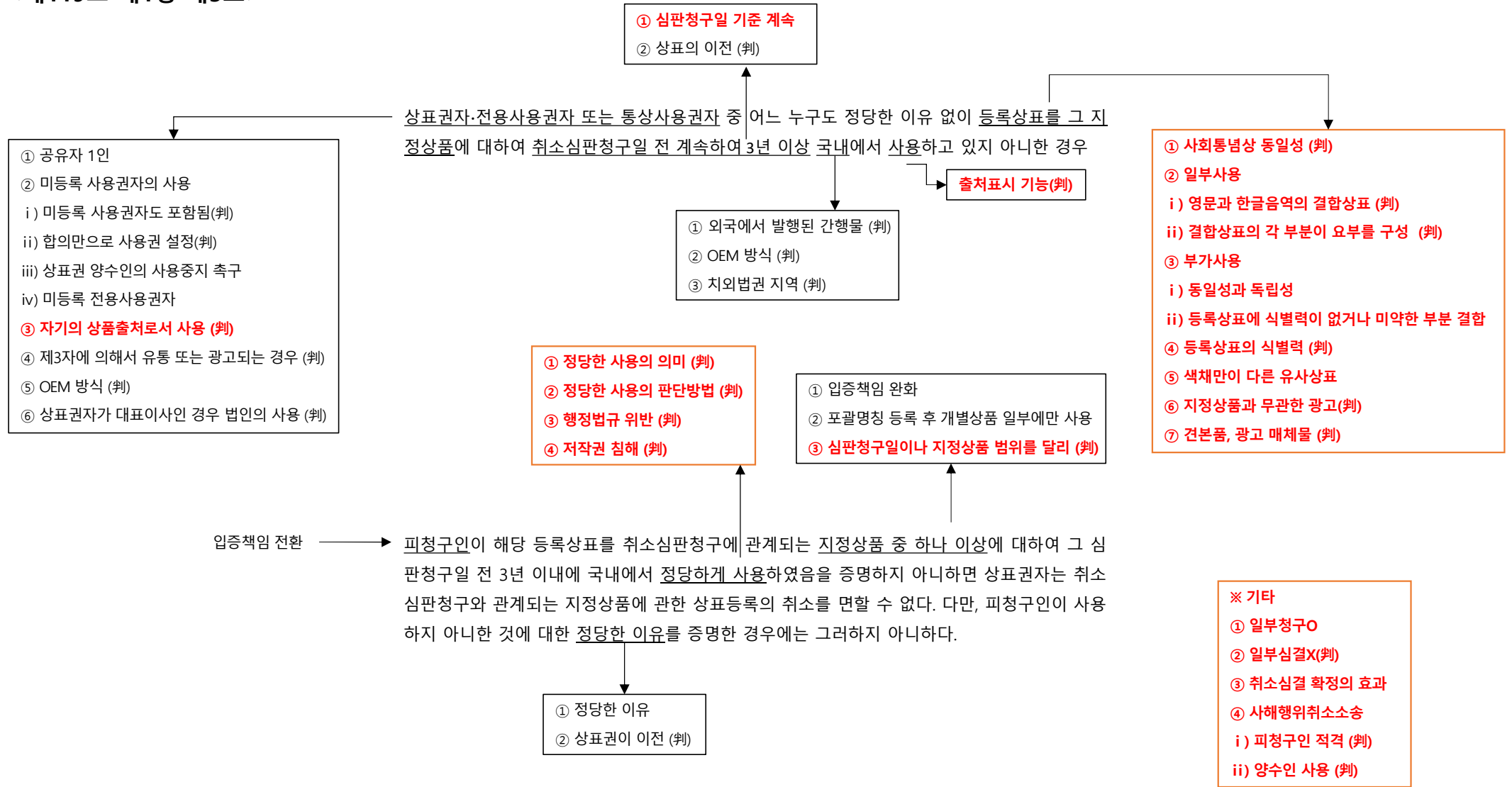


### <제119조 제1항 제2호>

※ 제120조



<제119조 제1항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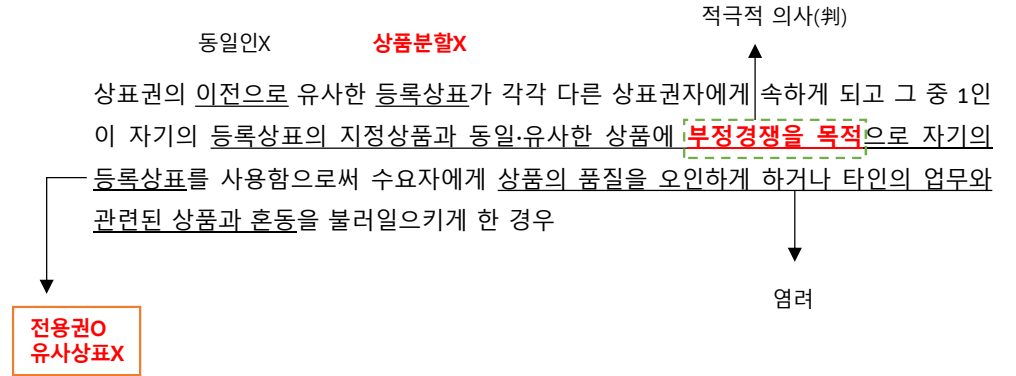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93조		제4호
제1항	상품분할이전(유사상품)	○
제2항	공유: 지분을 양도, 질권	○
제3항	공유: 사용권	X
제4항	업무표장권	○
제5항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	○
제6항	단체표장권	○
제7항	증명표장권	○
제8항	질권X	X

<제119조 제1항 제6호>

제9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119조 제1항 제5호>



<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

	내용
심판단계	허용(청구이유 보정, 직권심리)
심결취소소송단계	허용(무제한설)
제척기간	① 제척기간 없는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심판을 청구 (判) ②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判)
불사용취소심판	①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119조 제1항 제1호를 추가주장 불가(判) ②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119조 제1항 제1호를 추가주장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내용
의의, 취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종류	적극	속한다고 주장
	소극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청구	주체	① 적극적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 제3자(사용상표) 피청구인을 잘못 특정한 경우(判) ② 소극적 이해관계인(사용상표, 예정) → 상표권자
	객체	일부청구O
	시기	현존(判)
	절차	심판청구서 + 확인대상상표 및 사용상품
무효사유 명백	심판청구이익을 긍정(判)	
심결확정	① 권리범위확인 ② 일사부재리	
직권심리	직권심리와 그 한계(심결에 적용, 확인대상표장에 적용)	

### <선사용권>

		내용
성질		사실확정 목적X 권리확정 목적O
심리범위		① 상표적 사용, 동일·유사, 효력제한사유O ② 진병수, 사용권, 사회질서 위반X
선사용권	적극	심리X(判)
	소극	선사용권만 주장- 확인의 이익X(判)
제90조 제1항 제1호		심리O(判)

### <확인대상표장>

		내용
특정		확인대상상표 및 사용상품
특정정도		등록상표와 대비가능한 정도(구체적인 사용 실태, 사용상품의 형태X)
보정	심판	요지변경X(적권범위 예외)
	소송	심결전치주의(명백한 오기정정)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하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①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권리범위 판단(判) ②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判)
피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① 확인의 이익 (判) ② 입증책임(청구인)

### <권리대 권리>

		내용
적법성	적극	① 부적법(判) ② 피청구인이 상표권자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判) ③ 동일성과 독립성 (判)
	소극	적법(判)
확인대상 표장등록	심판단계	① 부적법(判) ② 본안심결한 경우 가. 인용심결에 대한 심취소(법원-인용판결/ 심판원-각하심결) 나. 기각심결에 대한 심취소(법원- 소각하 판결)
	소송단계	① 인용심결한 경우: 소제기는 부적법(判) ② 기각심결한 경우: 소제기는 부적법(判)

### <권범심과 침해소송의 관계>

		내용
관계	기속X, 유력한 증거자료 (判)	
심판청구이익	침해소송 계속 중 권범심 청구: 심판청구이익 긍정(判)	
소의이익	침해관련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권범심 심결취소소송의 소의이익 긍정(判)	

### <심결취소소송: 일반>

내용	
제소기간	①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불변기간, 부가기간) ② 제16조 제4호: 심결취소소송 절차X(判)
판단시점	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判) ② 심결시(判) ② 심결시 사실상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判) ③ 심결시 사실상태에 변동이 생긴 경우: 제35조 (判), . 제34조 제1항 제7호 (判)
심리범위	① 당사자계: 무제한설 (判) ② 결정계: 제한설(判), <b>이의신청서에 기재(判)</b>
기속력	① 의의, 취지: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 ② 성질(특수한 효력) ③ 기속력의 범위 i) 개개의 위법원인(위법성 일반X) ii)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判) ④ 2차 심결(기속력에 반하는 판단, 기속력에 따르는 판단)

###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내용		
당사자	원고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 거부된 자
	피고	결정계(특허청장) 당사자계(청구인, 피청구인)
공유상표권	원고	<b>유사필수적공동소송(判)</b>
	피고	고유필수적공동소송
공동심판 청구인	원고	유사필수적공동소송
	피고	유사필수적공동소송(判)
공유자 중 1인이 심판청구 하여 각하된 심결에 대한 원고적격		원고적격 없음(특判)
권리 승계와 원고적격	① 일반승계	심판절차 중단, 절차수계, 원고(수계한 당사자)
	② 특정승계	심판 계속 중 특정승계(判) / 심결 후 특정승계(判)

###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내용		
개요	본국관청 -> WIPO(국제사무국) -> 지정국관청(12개월 또는 18개월)	
장점	국제출원단계	i) 간편한 출원절차 ii) 비용절감
	국제등록이후 단계	i) 권리취득여부 명확 ii) 지정국의 추가 가능(사후지정) iii) 일원화

### <국제출원 절차>

내용		
개요	본국관청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	
요건	기초	<b>i) 기초(1이상) ii) 표장의 동일성 iii) 상품: 엄격한 동일X, 국내≥국제</b>
	본국관청	<b>국제사무국에 직접X</b>
	출원인 적격	본국관청이 소속된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 재내자/ 공동
	사용언어	<b>불어, 영어, 스페인어(본국관청이 선택, 우리나라- 영어)</b>
	수수료	WIPO에 납부
지정국 지정	<b>1국 이상 지정(본국관청이 우리나라 특허청인 경우, 자기지정X)</b>	
국제등록일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b>2개월을 기준</b>	
국제등록의 효과	i)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ii) <b>국제등록일부터 출원된 것과 동일하게 보호</b> iii) 국제등록일부터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보호(한국-손보청)	
국제등록	감축	i) 지정국(전부, 일부) 지정상품(전부, 일부) ii) 국제등록삭제X(사후지정 가능)
	포기	i) 지정국(일부) 지정상품(전부) ii) 국제등록삭제X(사후지정 가능)
취소	i) 지정국(전부) 지정상품(전부, 일부) ii) <b>국제등록삭제O(사후지정 X)</b> iii) 국제등록 명의인의 취소 신청, 본국관청의 취소 신청(국제등록의 종속성)	
	개념	체약당사자 추가
사후지정	요건	국제등록 된 지정상품 범위
	절차	사후지정신청서(국제사무국, 본국관청)
	사후지정일	i) 국제사무국이 사후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 ii) 본국관청이 사후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을 기준으로 결정
	사후지정 등록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보호기간	<b>국제등록일부터 10년</b>
명의변경	요건	지정국(전부, 일부) 지정상품(전부, 일부). 양수인(출원인 적격, 복수-전원)
	절차	신청서(국제사무국, 본국관청, 양수인의 체약당사자의 관청)
	효과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신청서(국제사무국, 본국관청) + 갱신수수료, 일괄갱신, 지정국 일부 갱신 포기	
국제등록의 종속성	i) <b>국제등록일부터 5년</b> ii) 집중공격 iii) 국내출원으로 전환(한국:제205조)	

<본국관청, 지정국관청 절차>

		내용	
본국	개념	대한민국 특허청이 본국관청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	
	개념	대한민국 특허청이 지정국관청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	
지정국	국상등출	개념	지정국이 대한민국
		출원일	<b>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b>
	업무표장	<b>적용X</b>	
	국상등출	① 우선권 주장 ② 상표의 취지 ③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대체	의의 취지	국내등록을 국제등록으로 대체
		요건	i)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국상등출 ii) 상표동일 iii) 주체동일 iv) 상품(국내≤국제) <b>v) 영역확장의 효력이 상표등록일 후에 발생</b>
		절차	직권, 신청
		효과	i) 소급효 ii) 조약우주
		예외	제119조 제1항 각 호(제4호X) 심판이 청구되고 i) 취소심결확정 ii) 존속기간만료 iii) 상표권, 지정상품의 일부 포기
		기타	① 제38조 제1항 ② 국내등록상표가 복수인 경우 ③ 국내등록상표가 국등기상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신고	i) 효력발생 ii) 일반승계
		효과	i)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각각 출원된 것으로 봄 ii) 유사상품이 함께 이전되지 않은 경우
	보정의 특례	시기	i) 제40조 ii) 제41조
		범위	<b>상품</b>
	출원변경	<b>적용X</b>	
	출원분할	<b>적용X</b>	
	조약우주	우선권 주장 인정, 증명서류는 제출불요	
	출원 시 및 우선심사	① 출원 시의 특례: 서면(취지) 및 증명서류를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b>② 우선심사 적용X</b>	
	거절이유 통지	① 거절이유 통지: 국제사무국 경우 ② 절차계속신청: 적용X	
	출원공고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	
	손실보상청구권	경고(국제출원서 사본)	
	등록결정 및 직권보정	① 등록결정: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 <b>② 직권보정: 적용X</b>	
	재심사 청구의 특례	<b>재심사 청구 적용X</b>	
	상표등록료	i)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함(제1항) ii) <b>국내출원의 등록료 납부규정 등을 적용X</b>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수수료 반환규정 적용O, 등록료 반환규정 적용X 출원 후 1개월 내에 취하·포기	
	상표원부	① 국내등록부: 상표권의 설정·처분의 제한 ② 국제등록부: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	
	설정등록	상표등록결정	
존속기간 등	①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 ② 갱신 <b>③ 갱신, 전환신청 규정 적용X</b>		
추가등록출원	<b>추가출원X</b>		
상표권 분할	<b>상표권의 분할 적용X (분할 이전은 가능)</b>		
상표권 등록의 효력	① 국제상표등록부 ② 국내등록부 ③ 이전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상등출 ② 국등기상 ③ 효과발생 시기		
상표권 포기	① 상표권의 포기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포기		
갱신등록 무효심판	<b>갱신등록, 전환등록무효심판 적용X</b>		

###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내용
국제등록 소멸 후의 재출원	국제등록이 취소(종속성)된 경우 i) 국제등록 소멸일로부터 <b>3개월</b> 이내에 출원 ii) <b>상품(국제≥국내)</b> iii) 상표동일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재출원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 i)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b>2년</b> 이내에 출원 ii) <b>상품(국제≥국내)</b> iii) 상표동일
심사	재출원(제205조, 제205조)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 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제척기간	국등기상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

### <입체상표>

	내용
의의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등록요건	식별력 ① 개요 (判) ②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반드시 X, 기호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된 경우 (判) ③ 입체적 형상에 기호 등이 결합된 경우 (判)
	가능성 대체적인 형상, 비용, 기술적 우위 (判)
출원	설명서, 상표건본 (실물X)
심사	① 상표가 불명확한 경우 ② 상표의 구성 및 태양X ③ 하나의 상표X ④ <b>유사판단: 특정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칭호·관념을 고려</b> ⑤ 요지변경 표장의 본질을 변경, 상표의 유형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	① 효력: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전용권, 금지권) ② 효력제한: 제9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③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92조 제1항, 제98조

### <기호 등에 색채가 결합된 상표>

	내용	
의의	<b>열위적·부수적 작용</b>	
심사	식별력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색채와 결합
	유사판단	색채만이 다른 경우
	요지변경	색채를 결합하거나 변경 등
등록	<b>[제225조]</b>	

### <색채만의 상표>

	내용	
의의	색채가 독립하여 상표로서 기능	
등록요건	식별력	제33조 제2항
	가능성	<b>상품의 이용과 목적에 필수 불가결, 특정인의 독점</b>
출원	설명서, 상표건본	
심사	① 상표가 불명확한 경우 ② 상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유사판단 ④ 요지변경	
등록	① 효력: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전용권, 금지권), 제225조 적용 안됨(제225조 제4항) ② 효력제한: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내용
의의		① 홀로그램상표: 빛의 간섭 효과 ② 동작상표: 동적 이미지
등록요건		표장 전체(특정 일면X)
출원		설명서, 상표견본,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심사		① 상표가 불명확한 경우(홀로그램상표의 경우 비디오 테이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 요구가능) ② 상표의 구성 및 태양X ③ 하나의 상표로 인식X ④ 유사판단 i) 홀로그램상표: 특정방향 ii) 동작상표: 전체 ⑤ 요지변경 표장의 본질을 변경, 상표의 유형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		① 효력: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전용권, 금지권) ② 효력제한: 제90조(특정한 일면X 표장 전체의 구성 O)

### <비시각적 상표>

		내용
의의		소리상표, 냄새상표
표장특정		① 시각적 표현으로 특정 ② 시각적 표현의 기재 불비에 대한 처리
등록요건	식별력	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요구 ② 제33조 제1항 제7호 등
	기능성	상품의 특성, 상품의 사용, 판매증가(심)
	기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
출원		설명서, 시각적 표현, 소리파일·냄새견본, 소리상표(악보), 상표견본X
심사		① 유사판단 ② 요지변경 i) 시각적 표현 기준(소리파일, 냄새견본 참고) ii) 불일치 iii) 표장의 본질, 상표의 유형
등록		① 보호범위: 시각적 표현(제91조 제1항) ② 효력: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전용권, 금지권) ③ 효력제한: 제90조 제1항 제2호, 제5호

### <위치상표>

		내용
의의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
구성요소	표장	실선
	상품의 형상	위치, 점선이나 쇠선
	위치	명확
등록요건	식별력	사식취(심)
	기능성	특정한 위치에 사용된 표장이 기능적인 경우
출원		설명서, 상표견본
심사		① 상표가 불명확한 경우(비디오테이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 요구가능) ② 상표의 구성 및 태양X ③ 하나의 상표X
등록		상품의 형상

### <업무표장>

		내용
의의		비영리 업무, 제2조 제3항
등록요건	정의규정	업무표장
	출원인 적격	국내 비영리 업무
	제34조 제1항 제7호	상표와 업무표장
출원		업무의 경영 사실, 변경X, 업무지정
등록		i) 업무표장권 침해 ii) 대가로 약간의 수수료 (判)
제한		① 양도 ② 사용권, 질권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의의		제2조 제1항 제3호, 상품+서비스, 제2조 제3항	제2조 제1항 제7호, 상품+서비스, 제2조 제3항
등록요건	정의규정	단체표장	증명표장
	출원인 적격	<b>법인(개인X)</b>	<b>① 증명·관리(개인O) ②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 ③ 증명표장</b>
	특유 거절 이유	정의, 출원인 적격, 정관	정의, 출원인 적격, 정관, 허락X
	출원	정관, 변경O	정관(규약), 증명·관리능력, 변경O, 지정상품
	심사	수정정관제출제도	수정정관(규약)제출제도
	등록	<b>① 적극적 효력(사용주체) ② 소극적 효력(권리주체)</b>	<b>① 적극적 효력(사용주체) ② 소극적 효력(권리주체)</b>
	제한 및 취소사유	① 이전 ② 사용권, 질권 ③ 특유의 취소사유 i) 제119조 제1항 제4호 ii) 제119조 제1항 제7호(가. 정관위반 나. 정관변경 다. 제3자 무단사용)	① 이전 ② 사용권, 질권 ③ 특유의 취소사유 i)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 정관 또는 규약(증명표장권자) 나.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정관 또는 규약(허락 받은 자) 라. 제3자 무단사용 마. 실질적 허락X
	특징		① 목적 품질 또는 기타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② 사용주체: 자기X, 타인O
	기타		① 제34조 제1항 제4호: 실정법의 인증요건을 회피 ②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34조 제1항 제12호 ③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마목

<지리적 표시>

		내용
의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
성립요건		① <b>상품: 서비스X</b> ②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③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④ 그 지역에서 <b>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b> 나타내는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같은 상품(유사X)

<지표장 및 지표증>

		지표단	지표증
의의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 지표단
등록요건	정의규정	① 정의(지리적 표시, 지표단) ② 문양, 출원인의 명칭, 비지리적 명칭, 엠블럼, 상품명	① 정의(지리적 표시, 지표증) ② 문양, 출원인의 명칭, 비지리적 명칭, 엠블럼, 상품명
	출원인 적격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로우X)	증명표장 동일
	제33조 제1항	제3호(산지), 제4호	지표단 동일
	제34조 제1항 제8호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	
	미등록지리적 표시	제34조 제1항 제10호, 제13호	
	제35조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특유 거절 이유	정의(지리적 표시, 지표단), 출원인 적격, 단체 가입 불허, 정관 기재불비	정의(지리적 표시, 지표증), 출원인 적격, 사용불허, 정관(규약) 기재불비	
	출원	정관, 지리적 표시, 변경X	정관(규약), 증명·관리능력, 지리적 표시, 변경X, 지정상품(증명표장 동일),
	심사	① 요지변경의 예외 ② 수정정관 제출제도	① 요지변경의 예외(지표단 동일) ② 수정정관(규약) 제출제도(증명표장 동일)
	등록	① 적극적 효력(사용주체) ② 소극적 효력(권리주체)	증명표장 동일
	무효심판	① 원시적 ② 후발적(보호중단)	① 원시적 ② 후발적(지표단 동일)
	취소심판	① 단체표장 특유의 취소사유 ② 지표단 특유의 취소사유(제119조 제1항 제8호) 단체 가입 불허 또는 허용, 제223조를 위반	① 증명표장 특유의 취소사유 ② 지표증 특유의 취소사유(119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223조를 위반
	기타	① 이전 제한 등: 단체표장 동일 ② 제34조 제3항: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① 이전 제한 등: 증명표장 동일 ② 제34조 제3항: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① <b>의의: 같은 상품</b> ② <b>제35조 X</b> ③ <b>제34조 제1항 제8호, 제10호X</b> ④ <b>제34조 제1항 제14호O</b> ⑤ <b>사용금지호X(제108조 제2항 및 제90조 제2항 제3호)</b> ⑥ <b>혼동방지외부 부과</b>	지표단 동일

### <기능성 이론>

		내용
의의		기능적이거나 경쟁에 유용한 특성
종류	실용적·심미적	실용적(실용적 기능) 심미적(심미적 가치)
	법률상·사실상	<b>법률상(독점시 경쟁상 월등한 우위O)</b> 사실상(독점시 경쟁상 월등한 우위X)
판단	입체상표	대체적 형상, 비용, 기술적 우위 (判)
	색채·색채조합	불가결, 가격·품질 (심)
	소리냄새	특성, 사용, 판매 증가(심)
관련 규정	등록요건	① 제34조 제1항 제15호 ② 입체적 형상 등이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判)
	효력제한	제90조 제1항 제5호

### <퍼블리시티권>

		내용
의의		성명 등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
상표권과 차이		그 본질상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인 상표권과는 구별. 상표로도 보호가능
인정여부		견해대립 有
보호	상표법	① 등록배제호(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② 상표권 확보를 통한 보호가능
	부경법	제2조 제1호 카목

###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내용
구별	상표권 발생	
장단점	① 등록주의 안정성, 편의성	
	② 사용주의 상표권 부여의 이론적 타당성, 저장상표 양산 방지	
보완	사용주의가미	① <b>등록주의를 취하되,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b> ② 상표등록 및 유지: 제3조, 제119조 제1항 제3호 ③ 사용에 의해 형성된 사실상태 보호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4호, 제46조, 제58조, 제99조, 제111조, 제34조 제1항 제20호
	부경법	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 <트레이드 드레스>

		내용
개념		상품(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
보호의 필요성		외관이 상품 판매경쟁에서 중요한 요소
성립요건		i) 식별력(본질적 또는 구체적) ii) 비기능적 iii) 출처혼동의 가능성
보호	상표법	① 입체상표 ② 색채상표 및 비시각적 상표의 보호
	부경법	①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② 상품형태 모방행위(제2조 제1호 자목) ③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 제1호 카목)

### <오픈마켓>

		내용
오픈마켓	온라인 장터	
상표권 침해	<b>운영자 침해X(判)</b>	
민법 제760조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침인조(判) ② 적절한 조치의무: 판매자의 판매정보, 신원정보 제공 X(判)	

### <창작물 수록 상품>

		내용
등록가능성	제33조 제1항 제3호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b>수록된 내용을 암시·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보사방표(判)</b>
	제34조 제1항 2호 전단	성질을 보사방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b>품질오인 염려가 없음(判)</b>
침해성립여부	상표적 사용	① <b>부정 判</b> (책의 제목은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님) ② <b>긍정 判</b> (시리즈물 출시 여부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
	제90조	보통명칭, 관용표장과 <b>같은 성격</b>
신용의 귀속 주체		<b>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판매업자에게 귀속(判)</b>



### <저작권>

		내용
등록가능성	제34조 제1항 제4호	① 저작권 비침해의 경우(判) 저작물의 제호나 캐릭터 명칭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적용불가 ② 저작권 침해의 경우(判) 제92조 제1항, 저작권 침해 판단이 현실적 곤란하여 적용불가
	제34조 제1항 제9호	캐릭터X (判)
저작권 침해	효력 제한	제92조 제1항
	불사용취소 심판	정당한 사용 긍정(判)

### <저명상표의 희석화>

		내용
	의의	고객흡입력 내지 판매력을 훼손
유형	상표약화	혼동가능성 없는 비유사 상품
	상표손상	부정적 이미지의 상품,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인 방법
적용	상표법	① 사용금지효: 동일·유사(비유사x) ② 등록배제효: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13호
	부경법	제2조 제1호 다목

※ 리눅스 사건(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판결)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 **리눅스** ” 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 영절하 사건(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판결)

서적을 '영절하! 중학입문', '영절하! 중학입문 Listening Script &Test Answers' 등 제호로 제작·판매하여 '영절하'를 제호의 일부로 하는 시리즈물의 형식으로 서적을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신청인의 '영절하' 제호의 사용 태양, 사용 의도,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록상표를 시리즈물인 서적의 제호의 일부로 사용함으로써 시리즈물인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수 있는 사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한 후 그와 같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상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